

된다.

차. 수사기관이 검사를 통하여 판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심사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수사기록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판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카. 영장 발부 전의 불법구속기간을 빼고도 일반형사사건에서는 30일, 국가보안법사건에서는 50일간 구속하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조사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도록 추궁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가혹행위를 동반하거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강요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타. 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에 대하여 법원이 적절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대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형식상 이유만을 붙여 기간연장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구속기소된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는 합계 6개월, 제2심에서는 합계 4개월을 넘어 구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런데 신속한 재판과 장기구속을 막기 위한 구속기간의 제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제1회 공판이 시작되는 것은 기소 또는 항소로부터 보통 2달 내지 3달이 지나서이며 그때부터 2주 내지 4주 정도의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건이 복잡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하려면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대신 구속기간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종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파. 최근에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의 수사과 재판관행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하. 수사와 재판은 실제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속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다음에는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자동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가족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절차를 청구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보석의 경우에는 정부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러한 예외사유, 예컨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주거가 부정할 때 등의 사유를 법원이 넓게 해석하여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5. 재소자의 인도적 처우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b)

가. 재소자들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다. 행형법 등은 1955년 국제연합이 채택하여 모든 가맹국에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최저기준규칙”)에 크게 미달하며 많은 부분에서 비인도적이기 까지 하다. 한편 일반 국민의 감시와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수감시설의 열악한 여건에 의하여, 국가와 교도행정당국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의하여, 교도담당자들에 의한 비밀비재한 폭행과 가혹한 징벌에 의하여 규약 제 10조에 반하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 나. 일반적인 상황

행형법은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미결수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미결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을 권리와 규약 제14조 제2항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대다수의 수용시설은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제공되는 급식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저급하며 균형있는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소자들의 주장이다.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은 매우 조악하다. 이들은 수감시설 내에서는 물론 수사과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감시설 이외의 곳에 갈 때에도 수의를 입어야 하는데 이 옷들은 누구든지 재소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남자기결수들은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하고 있다.

## 다. 규율과 징벌

피구금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대부분 징벌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중 금치는 보통 징벌방이라고 하는 작고 창문이 없는 방에 가두는 것인데 여러 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다. 감식은 징벌방에 가두어 둔 채 식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주는 것이다. 금치와 감식은 그 자체 비인도적 처우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형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교도관들에 의한 폭력과 고문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재소자들은 실내에서 함부로 자리를 벗어나거나 잠을 자서는 안되며 책을 입수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할 수 있다. 또 위 규칙은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취침시간 외에 침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기상후 세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취침시간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들은 재소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육체적으로 지나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명백히 가혹한 것이다.

재소자들에 대한 체벌 등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징벌은 주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재소자들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감자에 대한 징벌이 가혹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수감자가 징벌에 대하여 이의하고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금의 법체제에서 징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밖에 없는데 이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징벌은 집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법의 보호밖에 방치되어 있다.

## 라. 위생과 의료

행형법에는 의료진의 자격과 수, 여자 수용시설의 산전 산후 조치에 필요한 설비 및 유자격자를 둔 육아시설의 설치, 의무관의 임무와 광범위한 권한 등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거의가 빠져 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보건의료 진료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 마. 접견과 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참조)

가족 또는 친지의 접견은 기결수는 물론 미결수에 대하여도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도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접견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접견시간이 1회에 30분 이내로 한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허용된다. 미결수의 경우는 하루에 1회 접견이 허용되나

징역형을 받은 기결수의 경우는 원칙으로 1월에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점차 증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언론인이나 그밖에 수감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에는 거의 접견이 불가능하다. 언론인 등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은 변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안을 방문할 수 없는 점과 함께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이 은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서신의 수발 역시 수용시설측에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또 행형법 시행령 제70조는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가 부친 서신이나 재소자에게 온 서신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바. 집필의 허가

행형법은 피구금자가 집필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관행에 의하면 재소자는 필기도구의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며 서신을 포함하여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집필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수감자들이 집필의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재소자인권수호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재판의 준비를 위한 집필마저도 거부당한 일이 있다. 이러한 처우는 매우 가혹할 뿐 아니라 규약 제14조 제2항 (b)호가 보장한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사. 도서열독

행형법 제33조는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기결수와 미결수를 막론하고 특히 정치이념서적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서적 등을 입수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열독이 금지되는 도서에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부분에서 설명한 이른바 "이적표현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은 도서는 물론 법무부 스스로 만든 금서목록에 해당되는 도서 등 600여종 이상의 도서를 열독금지 대상으로 하여 재소자에 대한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도 반정부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서적, 출판물, 유인물 등에 대하여 수감시설측이 임의로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적표현물을 읽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판에서 스스로 변호하기 위하여 그 이적표현물을 반입하여 읽는 것이 금지되는 예도 있다. 일반신문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신문기사를 수감시설측이 임의로 삭제하여 버리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수용시설측이 도서의 반입을 불허한 데 대하여 재소자들이 항의하는 일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 각종 정치범들중에는 학생과 지식인등 도서의 열독과 집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열독과 집필의 금지는 특별히 가혹한 처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항의에 수용시설측은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여 충돌사태로 번지기도 한다.

재소자들이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 아. 분류처우

법무부에서 제정한 "교정누진처우규정"("처우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본인의 사상과 상관없이 "사상혁신범"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수형기간 동안 처우의 완화나 가석방 또는 귀휴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소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과 양심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매우 가혹한 처우라고 평가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장기수들은 가석방이나 사면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전향"을 하지 않은 장기수들은 2년이상 독거수용을 하지 못하게 한 행형법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독거수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비전향수는 출역과 취업이 금지되어 1평미만의 방안을 벗어날 수 없고 출역과 취업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밖에도 처우규정에 따라 점차 개선될 수 있는 점견회수, 급여, 교육과 기회 등의 각종 처우면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모든 혜택이 거부된다.

#### 자. 작업

작업에 복무하는 수형자들은 작업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일반인이 노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최저수입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이고 작업 중 사망, 부상 등 재해를 입는 경우 미미한 금액의 위로금과 조위금을 지급받는 이외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 차.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구제

교도소 등에 대한 감독과 권리를 침해 당한 재소자들이 소송 등에 의해 구제를 받는 것은 실효성있게 이행되거나 보장되고 있지 않다. 수용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에 민간인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특히 안기부는 심지어 국회나 감

사원의 감독 조차도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임연히 사람을 구속하여 수용하는 시설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한의 재소자들은 최저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규약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수용시설안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등에 대하여 재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형법 등 관련 규정은 최소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재소자들에게 가하여지는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와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수감제도는, 법령의 선언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이지도 응보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1990년 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교도소 등에서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강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정부가 범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감을 부추기는 듯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규약 제10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 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처우문제

### 16.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금지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8조

가. 고전적인 의미의 노예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약 제8조 제3항(a)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경우에는 남한에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뜻은 명백하지 않으나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의 정의를 원용한다면 남한에는 강제노동이 존재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제1조는 "정치적 억압이나 교육으로서의 수단 또는 정치적 견해나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재"(a) 및 "동맹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제재"(d)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강제노동도 금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강제노동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규약이 금지한 강제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결과가 된다.

#### 다.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자들의 파업에 관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은 쟁의로 인하여 그 사용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넓게 해석하여 중한 형벌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쟁의중에 연립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금지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집시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근로자들이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연장근로를 단체로 거부하는 행위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 이와 같은 법률과 법적용의 관행은 모두 국제노동기구 제105호 조약이 금지하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제재", 즉 강제노동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며 규약 제8조 제3항 (a)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선원의 강제노동

선원들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는 등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해야 할 것은 밀항단속법의 문제이다. 이법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이 지정한 시간안에 귀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박을 무단 이탈한 이상 이탈 또는 귀선하지 않은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이선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승선중 질병에 걸리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견디지 못한 선원이 선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하고 조기귀국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공관을 찾아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조차 이선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곤경에 처한 국민에게 법적 구조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처럼 법률을 선의로 적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선원들은 일단 승선하여 우리 영해를 벗어난 이상 아무리 선원생활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도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하선할 수 없고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결

국 선원생활을 계속하면서 노동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17. 거주·이전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2조, 제14조 제2항

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정부당국에게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을 얻어놓고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기는 커녕 기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단지 수사의 필요에 의해 출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규약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국금지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출국금지대상자는 자신이 출국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등에 나가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돼 출국을 하지 못하고 예정된 일정을 비꾸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나. 주택의 강제철거

국민들은 심각한 주택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거나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곳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또는 민간기업에게는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들은 도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중산층 이상이 살게 될 고급 아파트를 건설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 반면 철거되는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그 곳을 떠나 어디엔가 다른 주거를 찾아야 한다.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많은 경우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철거되는 건물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더욱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택이 부족해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현실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맞이할 주택은 많지 않다. 이들은 주택건설자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철거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비호를 받는 폭력배들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해 강제철거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배들에 의해 수없이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상에서 본 정부의 주택정책과 결부된 강제철거의 관행은 주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 사생활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17조

가.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침해

경찰과 민간 및 군 정보기관들은 주로 반정부인사들에 대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사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군 복무 중 국군보안시령부("보안사")에 연행돼 이른바 '수사협조'(강요에 의해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것)를 해오던 윤석양 이병은 1990년 10월 4일 보안사가 수많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보안사는 사찰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청, 우편물검열, 불법주거침입, 불법 압수·수색과 미행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이병의 폭로가 있는 뒤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국군보안사령관의 책임을 물어 이들을 해임하고 앞으로는 군기관의 민간인 사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곧 거짓임이 드러났다. 1991년 3월 16일 국군기무사령부 서울분실장은 전국 11개지역 기무부대에 '긴급내사의뢰'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공문에 따르면 기무사 서울분실은 학생운동권 출신 12명을 '의식화용의자'라고 밝히고 이들의 가족관계, 배우사상과 성향, 연고지 주민의 평, 사회문제권 인 접촉 등 평소 언동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나. 우편물의 검열

임시우편단속법(1948.12.1 법률 제11호) 상 대통령은 우편물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검열을 위해 체신부 산하에 우정연구소가 설립돼 전국의 우체국에서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우정연구소는 안기부로부터 검열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한국전쟁 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그 후 40여년이 흘러 공산주의의 위협이 전혀 없어졌다. 그럼에도 이 법이 행정부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나 통제 없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우편물을 검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규약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신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해당한다.

다. 도청

경찰과 정보기관들은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면전 대화와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안기부 서울분실의 기술보안단이 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도청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라. 행정전산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모든 국민에 대한 78개 항목의 인적사항을 담고있다. 이것은 경찰청사에 설치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수사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행정전산망에 수록된 정보는 여당 정치인, 기업체, 언론기관, 의료보험조합, 금융기관 등에도 제공 또는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마. 피의사실의 공표

형법 제126조는 기관이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검찰, 경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일상적으로 위 법을 위반하며 반정부인사가 피의자가 된 때에는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통해 국민대중의 지지를 잃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까지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에게는 이 위반행위를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들은 그러한 수사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19. 여성에 대한 차별 - 관련된 규약의 조항: 제3조,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가. 여성을 차별하는 법

1989년 12월 가족법이 개정되어 많은 남녀불평등조항이 개정되는 등의 결과로 여성의 법적 평등은 대체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 남아 있다.

가족법은 여전히 호주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또한 이혼시 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부의 재산을 공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이혼한 여자가 결혼생활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엄격한 입증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여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10 내지 55%의 누진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혼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15 내지 60%의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적법은 최우선적으로 사람이 출생한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나라 국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표준으로 삼아 그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 그 사람에게 한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규약 제24조 제3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고용 분야에서의 여성 차별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법규정상으로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이나 승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분야에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 다. 보육시설의 미비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차별요인은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의 태부족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민간보육시설에 엄격한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당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지역의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채,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 라. 성폭력의 증가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향락산업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래된 향락산업의 번창과,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음으로 인하여 조장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0. 결사의 자유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2조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와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4부 자료

###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멸한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체와 단합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이 탄압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연합의 출현과 함께 모든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연합헌장에서 그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을 다한 일을 하였다.

여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보충하고 증진할 것을 신약한 일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위와 같은 책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 위와 같은 책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 위와 같은 책

- 국가보안법
- 형사소송법
- 행형법
- 행형법 시행령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임금결정으로서의 고용상의 남녀차별이나 승진, 배치, 임금, 해고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4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여전히 상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평등에 여성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는 법칙이 너무 약하고 정부가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나. 보육시설의 미비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원인이는 무엇인가도 보육시설의 미비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직장강제퇴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거나 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1991년 1월 14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민간의보육시설에 엄격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민간보육시설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저역의 기존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한 채, 정부에 의한 해결기준을 갖추기는 어려워 폐쇄될 우려가 크다.

리. 성폭력의 증가

최근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있어서 피해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성폭력과 성범죄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양립산업에 대해 갖다한 태도를 보인 나머지 1980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초래된 양립산업의 번창과,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주간지등이 경쟁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담음으로 인한 것이다.

- 음습 자유 : (주)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음습 자유 : (주)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음습 자유 : (주)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0. **결사의 자유** - 헌법 제35조 제1항, 제2항
- 법안보(주)**
- 법송수(주)**
- “법안보(주)의 이적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실제상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결사의 노동운동단체의 결성을 제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기존의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이 단단히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날로 두터워지도록 힘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연합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녀의 동등권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연합헌장에서 그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일이 있다.

여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또 지켜나갈 것을 서약한 일이 있다.

이 서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되는 이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해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인민과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의 표준으로 삼고자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그러니 각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의식하면서, 회원국 국민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 사이에 다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즉 교육과 교화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줄 알게 하고, 또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가 범세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 났으니, 피차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

**제 2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건 신탁통치 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건,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법적·국제적 지위를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 5 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아무런 차별없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는 그런 차별에 관한 교사(教唆)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사람은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국가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아무도 함부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 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관해 재판받을 때, 독립된 그리고 공정한 법정이 관장하는 공개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訴追)당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推定)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이유로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형사 범죄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지워지지 않는다.

**제 12 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국의 경계 안에서는 이동 및 거주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소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

1.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제 16 조

1.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남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혼하게 될 때, 결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스런 그리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

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행사·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19 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전달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20 조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어떤 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 21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공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스런 선거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 22 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자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1.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직업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고, 실업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4 조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노동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의료·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질병·능력 상실·배우자의 사망·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 제 26 조

1.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기 초교육의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등교육은 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인종 집단 또는 종교 집단간의 이해·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 제 2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 29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격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진다.

2. 사람은 누구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다음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민주사회의 도덕·공공질서·일반 복지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된 법률상 제한을 말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제 30 조

이 선언에 어떤 규정도, 특정 국가·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 중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 제 1 부

###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 제 2 부

###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可用)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재산 · 가문 ·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민(非自國人)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 제 3 조(남녀평등)

가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 4 조(공공복지에 의한 제한)

가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 5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 제 3 부

### 제 6조(노동의 권리)

1.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맹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 제 7조(공정·유리 노동조건 향유권)

가맹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i)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ii)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b)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c) 선임순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당한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균등한 기회

### 제 8조(노동기본권)

1. 가맹국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a)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법률로 정해진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하지 못한다.

(b) 노동조합이 국내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c) 법률로 정한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

(d)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 제 9 조(사회보장)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 제 10 조(가정·어머니·어린이 보호)

가맹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 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임금을 주어서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일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 제 11 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

1.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b)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 12 조(건강권)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맹국은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저하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 (b)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 (d) 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

### 제 13 조(교육받을 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바, 가맹국은 이 점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을 가맹국은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각종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c)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d)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全)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e) 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3.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해 줄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 제 14 조(무상초등의무교육의 실시의무)

이 협약 가맹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맹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 15 조(문화적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b)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c)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가맹국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벌이는 국제적 연락·협력의 장려 및 발전이 여러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 제 4 부

#### 제 16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를, 이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a)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그 사본을 보낸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맹국으로부터 온 보고의 사본 또는 관련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 17 조

1.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맹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 제 18 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는 협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 제 19 조

가맹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전기 보고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수 있다.

### 제 20 조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가 그 일반적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문서가 전기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그 언급에 대한 논평도 위와 똑같다.

### 제 2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와, 가맹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제 22 조

이 협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로부터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 사안이, 전기 기관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제 23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개최.

### 제 24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제 25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제 5 부

### 제 26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할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8 조

이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30 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 31 조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 제 1 부

####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 제 2 부

####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통해 여건을 마련해 놓지 못한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 (b)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제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 (c)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 제 3 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 4 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脫)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 5 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 제 3 부

#### 제 6 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 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특사 또는 감형은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협약의 가맹국은 사형폐지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원용(援用)해서는 안 된다.

#### 제 7 조(고문·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 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 8 조(노예·예속·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 3.(a)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a)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3항 (b)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

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ii)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iii)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iv)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 또는 용역.

#### 제 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지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0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2. (a)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지위에 알맞는 별도 대우를 받는다.

(b)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 제 11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하지 않는다.

#### 제 12조(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위생·도덕·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제 13 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 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 제 14 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은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인정된 도덕·공공질서·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또는 그 공개가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이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b)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c)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d)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아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e)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f)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g)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갱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어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 제 15 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 제 16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7조(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의식·행사·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공공질서·공중건강·도덕·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 제 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공공질서·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 제 20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적대감정·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 제 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 제 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공공의 안녕·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 23 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 제 24 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 제 25 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b)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c)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 제 26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제 27 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 4 부

### 제 28 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의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 29 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 제 30 조

1. 위원회 위원의 첫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되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 제 31 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 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 제 32 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번째 선거가 있는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 제 33 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 34 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 제 35 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 38 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 39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 (b)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 40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 (a)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 (b)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예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있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해당국 앞으로 보낸다. 또한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 41 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 (a) 한 가맹국이 불 때에 다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이미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 (b)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 (c)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구제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d)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 (e) (c)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f)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g)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i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 제 42 조

##### 1.

(a)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지 못해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를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게 보고를 제출한다.

(a)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b)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c) (b)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

·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된다.

(d) (c)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 제 43 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 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 편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 제 44 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 제 45 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 제 5 부

#### 제 46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제 47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제 6 부

#### 제 48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 제 49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50 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52 조

제4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 53 조

-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맹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약칭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규정의 시행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이 의정서에 가맹하는 협약 가맹국은,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국민의 통보를 접수·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통보가 의정서에 가맹하지 아니한 협약 가맹국에 관계가 되는 것일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에 열거된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어야 한다.

제 3 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 것·통보 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협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 제 4 조

1.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정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주의 환기를 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사안을 밝히는, 그리고 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동안에 취한 구제조치를 밝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5 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계 가맹국이 보내온 모든 서면 정보에 비추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으로부터 온 통보 검토하지 않는다.
  - (a)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지 않을 것.
  - (b)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 제 6 조

위원회는 협약 제45조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에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시킨다.

#### 제 7 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채택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 제 9 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또는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 11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의정서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12 조

- 어느 가맹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탈퇴 선언은 그 통보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 13 조

- 이 의정서의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선언.

제 14 조

- 이 의정서는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國家保安法

(1980年 12月 31日 法律第 3318號 全文)  
改正 1987. 12. 4. 法3993號 1991. 5. 31 法4373號

-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第 2 條)
- 第 2 章 罪와 刑 (第 3 條 ~ 第 17 條)
- 第 3 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 18 條 ~ 第 20 條)
- 第 4 章 報復과 援護 (第 21 條 ~ 第 25 條)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① 이 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 이 법을 解釋通用함에 있어서는 第 1 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의 人權을 不當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1991. 5. 31)

第 2 條 【定義】 ① 이 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僭稱하거나 國家를 凌辱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외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을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1991. 5. 31) ② 削除 (1991. 5. 31)

第 2 章 罪와 刑

第 3 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 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第 1 項 第 1 號 및 第 2 號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⑤ 第 1 項 第 3 號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第 4 條 【目的遂行】 ①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1. 刑法 第 92 條 내지 第 97 條·第 99 條·第 250 條 第 2 項·第 338 條 또는 第 340 條 第 3 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 條에 定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 98 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蒐集·누설·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重大한 不이익을 致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나. 가목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 115 條·第 119 條 第 1 項·第 147 條·第 148 條·第 164 條 내지 第 169 條·第 177 條 내지 第 180 條·第 192 條 내지 第 195 條·第 207 條·第 208 條·第 210 條·第 250 條 第 1 項·第 252 條·第 253 條·第 333 條 내지 第 337 條·第 339 條 또는 第 340 條 第 1 項 및 第 2 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誘引하거나 艦船·航空機·自動車·武器 기타 物體를 移動·取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 214 條 내지 第 217 條·第 257 條 내지 第 259 條 또는 第 262 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體를 損壞·隱匿·偽造·變造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 1 號 내지 第 5 號의 行爲를 煽動·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事實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 1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③ 第 1 項 第 1 號 내지 第 4 號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④ 第 1 項 第 5 號 및 第 6 號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 5 條 【自進支拂·金品收受】 ①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拂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 4 條 第 1 項 각 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 4 條 第 1 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收受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 第 1 項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 削除 (1991. 5. 31)

第 6 條 【潛入·脫出】 ①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 削除 (1991. 5. 31) ④ 第 1 項 및 第 2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第 7 條 【讚揚·鼓舞等】 ①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 削除 (1991. 5. 31) ③ 第 1 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④ 第 3 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⑤ 第 1 項·第 3 項 또는 第 4 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畫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 項에 定한 刑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⑥ 第 1 項 또는 第 3 項 내지 第 5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⑦ 第 3 項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第 8 條 【會合·通信等】 ① 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方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 削除 (1991. 5. 31) ③ 第 1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1. 5. 31) ④ 削除 (1991. 5. 31) 第 9 條 【便宜提供】 ① 이 법 第 3 條 내지 第 8 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1. 5. 31) ② 이 법 第 3 條 내지 第 8 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제공하거나

潛伏·會合·通信·連絡을 위한場所를 제공하거나 기타의方法으로 편의를 제공한者는 10年이하의懲役に處한다. 다만, 본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한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年以上の 有期徒刑에 處한다.

⑤削除(1991. 5. 31)

第10條【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본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改正 1991. 5. 31)

第11條【特殊職務 違反】 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이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그 職務을 違背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다만, 본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誣告, 捏造】 ①他人으로 하여금 刑事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이 法의 罪에 대하여 誣告 또는 偽證을 하거나 證據를 捏造·濫減·隱匿한 者는 그 各條에 定한 刑에 處한다.

②犯罪搜查 또는 情報의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이를 指揮하는 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第1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다만, 그 法定刑의 最低가 2年未滿인 때에는 이를 2年으로 한다.

第13條【特殊加重】 이 法, 軍刑法 第13條·第15條 또는 刑法 第2編 第1章內의 罪·第2章 外의 罪를 犯하고 禁錮 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終了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가 第3條 第1項 第3號 및 第2項 내지 第5項, 第4條 第1項 第1號 刑法 第94條 第2項·第97條 및 第99條, 同項 第5號 및 第6號, 第2項 내지 第4項, 第5條, 第6條 第1項 및 第4項 내지 第6項, 第7條 내지 第9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法定刑의 最高을 死刑으로 한다.

第14條【資格停止의 併科】 이 法의 罪에 關하여 有期徒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 併科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第15條【沒收·追徵】 ①이 法의 罪를 犯하고 그 報酬을 받은 때에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②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 訴追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押收物의 價기 또는 國庫歸屬을 命할 수 있다.

第16條【刑의 減免】 다음 各條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1. 이 法의 罪를 犯한 후 自首한 때  
2.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이 法의 罪를 犯한 他人을 告發하거나 他人이 이 法의 罪를 犯하는 情을 報知한 때  
3. 削除(1991. 5. 31)

第17條【他法適用의 排除】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는 勞動爭議 調整 法 第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章 特別刑事訴訟規定

第18條【參考人의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定한 罪의 參考人으로 출석을 要求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2回이상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管轄法院 判事의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하여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近接한 警察署 기타 正當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第19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 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場合に 搜查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 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延長은 各 10日 이내로 한다.

第20條【公訴保留】 ①檢事는 이 法의 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참작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公訴의 提起없이 2年을 경과한 때에는 訴追할 수 없다.

③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法務部長官이 定한 監視·保護에 關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④第3項에 의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경우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한 犯罪事實으로 再拘束할 수 있다.

第4章 報償과 援護

第21條【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從事하는 者에 對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戦狀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場合に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 內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查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 內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의 請求 및 支給에 關하여 필요 事項은 大統令으로 定한다.

第23條【報償】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關

련하여 傷傷을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 禮遇에 關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改正 1991. 5. 31)

第24條【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 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1991. 5. 31)  
②委員會는 審査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의 출석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필요 事項은 大統令으로 定한다.

第25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準用規定】 이 法의 罪를 犯한 者가 軍事法院法 第2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이 法의 規定을 判事는 軍事法院管轄官으로, 檢事는 軍事法院檢察官으로, 司法警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 본다. (改正 1987. 12. 4)

附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反共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舊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③ (他法律에 照準)

④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舊法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을 引用하는 경우에는 舊法의 法律에 照準하여 이 法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舊法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舊法의 規定에 照準하여 이 法의 該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經過措置】 ①舊刑法 第2編 第2章內의 罪에 關한 罪, 第3章 外의 罪에 關한 罪, 舊國防警備法 第32條, 第33條, 舊海岸警備法 第8條의 2, 第9條, 舊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舊刑法 第13條, 第15條의 規定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이 法 施行後에 舊刑法의 規定에 照準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도 또한 같다.

②이 法 施行前에 特殊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의 判決을 받은 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前에 舊刑法의 國家保安法 또는 反共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處分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87. 12. 4; 軍事法院法)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 부터 施行한다.

第2條~第4條 省略

刑事訴訟法

(1954年 9月 23日 法律 第341號)

改正 1961. 9. 1 法 705號 1963. 12. 13 法 1500號  
1973. 1. 25 法 2450號 1973. 12. 20 法 2653號  
1980. 12. 18 法 3282號 1987. 11. 28 法 3955號

第1編 總則

第1章 法院의 管轄

第1條 (第1條~第16條의 2)

第2章 法院職員の 除斥, 忌避, 回避

第3章 訴訟行爲의 代理와 補助

第4章 辯護

第5章 裁判

第6章 送達

第7章 期間

第8章 被告人의 召喚, 拘束

第9章 押收와 搜索

第10章 檢證

第11章 證人訊問

第12章 鑑定

第13章 通譯과 翻譯

第14章 證據保全

第15章 訴訟費用

第2編 第1審

第1章 搜查

第2章 公訴

第3章 公判

第1節 公判準備과 公判節次

第2節 證據

第3節 公判의 裁判

第3編 上訴

第1章 通則

第2章 抗訴

第3章 上告

第4章 抗告

第4編 特別訴訟節次

第1章 再審

第2章 非常上告

第3章 略式節次

第5編 裁判의 執行

第1編 總則

第1章 法院의 管轄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①[法院] 法101-110, 法113-32의 5, [事物管轄] 法17-25, 29-31, 32의 5, [管轄의 指定] 移轉] 法14-16, [軍事裁判의 管轄] 法110, 軍法會議의 裁判權에 關한 法律  
②[本件 被告事件은 法院職權法 第29條 第1項 第3號에 의하여 地方法院 合議部에 屬한 事件이더라도, 이를 地方法院 單獨判事가 審理裁判하엿음은 事物管轄에 關한 法律에 違背한다. (1968. 8. 30 68도582)]

第2條【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管轄違反인 境遇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①[管轄違反] 319-320, [時效停止] 253 ※ 日刑訴13  
②[單獨判事에 對하여 地方法院 合議部에 抗訴가 提起된 후, 그 抗訴者가 合議部의 事物管轄에 屬하는 請求로 認定이 되었다 하더라도 管轄에 屬하는 影響이 없고, 그 抗訴者가 單判을 하였다 하여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970. 6. 30 70다 743)]

第3條【管轄區域外에서의 職務】 ① 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外에서 職務을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③[本件發見] 106-168, [編託規定] 373-77, 80-136-145-167-431, [受命法官] 136-145-167 ※ 日刑訴12-14

第4條【土地管轄】 ①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船舶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船外에 船籍地 또는 犯罪後의 船着地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 航空機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④[管轄] 各法院, [例外] 319-320, [違反 申請] 320, [住所] 118-36, 117-32, [居所] 19-20, ④[大韓民國船舶] 船籍地, [船舶地] 船籍地, ⑤[大韓民國航空機] 船籍지, 6 ※ 日刑訴2

第5條【土地管轄의 併合】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關하여 管轄權 있는 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管轄할 수 있다.  
①[土地管轄] 4, [關聯事件] 11 ※ 日刑訴6

第6條【土地管轄의 併合審理】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 各 다른 法院에 屬屬된 때에는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法院으로 하여금 併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①[土地管轄] 4, [關聯事件] 11, [決定] 37-39, 403 ※ 日刑訴8

第7條【土地管轄의 審理分離】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屬屬된 境遇에 併合審理의 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 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①[土地管轄] 4, [關聯事件] 11, [決定] 37-39, 402-403, [移送上級法院] 法17-25 ※ 日刑訴7

第8條【事件의 職權移送】 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로 管轄하는 同級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①[土地管轄] 4, [關聯事件] 4, [移送] 367-394

第9條【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 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指定를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①[指定請求方式] 16, [管轄違反判決] 319-320 [裁判指定] 343-358-374-453-457-458, [直近上級法院] 法17-25, [管轄違反判決] 319-320 ※ 日刑訴15

第10條【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을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울 念慮가 있는 때  
①[移轉의 申請] 16 ※ 日刑訴7

第11條【管轄指定의 決定】 管轄指定를 申請한 後에 決定을 할 수 없다. 1967. 3. 11 67호12

第12條【管轄指定의 方式】 ①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是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即時公訴를 接受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78. 10. 10 78도2225)

第9條【事物管轄의 併合】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併合管轄한다. 但 決定으로 管轄權 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①[事物管轄] 法17-25, 29-31, [關聯事件] 11, [決定] 37-39, 403-403, [單獨判事] 法17-25, 29-31, 32의 5

第10條【事物管轄의 併合審理】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 各 다른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に 屬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屬한 事件을 併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①[刑訴] 法4, [事物管轄] 法17-25, 29-31, [關聯事件] 11 ※ 日刑訴5

第11條【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1. 1人이 犯한 數罪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4. 犯人隱匿罪, 證據濫減罪, 偽證罪, 虛偽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 本犯의 罪

①[關聯事件과 管轄] 5-7-9-10, [刑訴] 37-40, [共同] 刑30-34-87, [同時] 刑19-263, [犯人隱匿罪] 刑151, [證據濫減罪] 刑155, [偽證罪] 刑152, [虛偽鑑定通譯罪] 刑154, [贓物罪] 刑362-364 ※ 日刑訴9

第2條에서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가 같은 刑法에서 定하는 共同罪, 共同正犯·從犯, 從犯의 경우뿐만 아니라, 必要의 共同·合犯, 共同過失犯·過失의 同時犯 등을 包含이 된다. (1978. 10. 10 78도2225)

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屬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①[事物管轄] 法17-25, 29-31, [合議部] 法127-29, [本條와 公訴書決定] 328-1 ※ 日刑訴10

第13條【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屬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法院으로 하여금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①[事物管轄] 法17-25, 29-31, [同一事件] 254, [本條와 公訴書決定] 328 ※ 日刑訴11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 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指定를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①[指定請求方式] 16, [管轄違反判決] 319-320 [裁判指定] 343-358-374-453-457-458, [直近上級法院] 法17-25, [管轄違反判決] 319-320 ※ 日刑訴15

第15條【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 申請을 할 수 있다.  
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을 때  
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 어려울 念慮가 있는 때  
①[移轉의 申請] 16 ※ 日刑訴7

第16條【管轄指定의 決定】 管轄指定를 申請한 後에 決定을 할 수 없다. 1967. 3. 11 67호12

第17條【管轄指定의 方式】 ①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是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上級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即時公訴를 接受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刑訴法5, ①(官廳의 指定·移轉)14, 15, (近上法院)法17, 25, ②(公訴提起)254, 246, 248, (特別規定)反國家6
第16條의 2【事件의 軍事法院移送】

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該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 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이 影響이 있다. (新設 1973.1.25. 改正 1987. 11. 28)

第2章 法院職員の 除斥, 忌避, 回避

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親族, 戶主, 家族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輔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한 때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 1. 法官이 前條各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2. 法官이 不公正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② 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第19條【忌避申請의 管轄】① 合議法院의 法官에 對한 忌避는 그 法官의 所屬法院에 申請하고 受命法官, 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對한 忌避는 當該法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20條【忌避申請後의 處理】① 忌避申請이 前條의 規定에 違背된 때에는 申請을 받은 法院 또는 法官은 決定으로 이

를 棄却한다.
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境遇를 除外한 때에는 遲滯없이 忌避申請에 對한 意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 忌避當한 法官이 忌避의 申請을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決定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21條【忌避申請에 對한 裁判】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決定에 關한 裁判을 行하지 못한다.

第22條【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0條 第1項의 境遇를 除外한 때에는 訴訟進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23條【忌避申請棄却과 即時抗告】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行할 수 있다.

第24條【回避의 原因等】 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第25條【法院書記官等에 對한 除斥, 忌避, 回避】 ① 本條의 規定은 第17條 第7號의 規定을 除外한 法院의 書記官, 書記와 通譯人에게 準用한다.

第26條【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刑法第9條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 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가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第27條【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② 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第28條【國選辯護人】 다음 境遇에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第29條【辯護人選任權者】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姊妹와 戶主는 獨立하여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0條【辯護人의 選任權者의 告知】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때에 그 選任한 辯護人의 姓名과 住所를 告知하여야 한다. (新設 1973.1.25. 改正 1987. 11. 28)

第31條【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辯護士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第32條【辯護人選任의 效力】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和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 公訴提起前의 辯護人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第33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4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5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6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7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8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39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0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1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2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3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4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5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6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7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8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49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0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1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2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3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4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5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6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7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8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59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第60條【國選辯護人의 取消】 公訴提起後의 國選辯護人은 該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後에 選任된 國選辯護人이 公訴提起前의 國選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5. 被告人이 貧困 其他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때. 但 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限한다.

第34條【被告人·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당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고 醫師를 하여금 診察하게 할 수 있다.

第35條【書類, 證據物의 閱覽, 謄寫】 辯護人은 訴訟係屬中의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第36條【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行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37條【判決, 決定, 命令】 ① 判決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第38條【裁判書의 方式】 裁判은 法官이 作成한 裁判書에 依하여야 한다. 但 決定 또는 命令을 告知하는 境遇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調書에만 記載하여 할 수 있다.

第39條【裁判의 理由】 裁判에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但 上訴를 不許하는 決定 또는 命令은 例外로 한다.

第40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41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2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43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4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5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46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47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9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50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1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2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53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54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55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0條【裁判書類의 記載要件】 ① 裁判書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을 發하는 者의 姓名, 年齡, 職業과 住居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41條【裁判書의 署名等】 ① 裁判書에는 裁判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 裁判書 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3條【同前】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判決을 宣告할 때에는 主文을 朗讀하고 理由의 要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44條【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事件】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裁判은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한 때로부터 10日以内에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45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46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47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9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50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1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2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53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54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55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6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57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8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9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60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61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62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1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42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3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4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45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46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47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48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49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0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1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52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53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54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5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56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57條【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の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58條【裁判書의 謄·抄本의 請求】 被告人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59條【裁判書의 謄·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 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할 수 있다.

第60條【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始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第61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第62條【調書의 作成方式】 ①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第63條【檢證等의 調書】 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11. 辯論의 要件

#### 12. 裁判長이 記載를 命한 事項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記載를 許可한 事項

#### 13.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最終陳述할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 事實

#### 14. 判決其他의 裁判을 宣告하는 告知한 事實

① [公判調書] 52-56, 法組 10, 7. ② [裁判調書] 38 頁. [新追加項下記載] 352②. [公判調書] 275, [代理人] 26-28, [代表者] 27, [辯護人] 30-33 (輔助人) 29, [通譯人] 180, [被告人出獄權] 276-277 [公判調書] 27③-107, 法組 53, [公判事實陳述] 285-298, [被告人陳述機會] 286-303 (訪問調書記載要件) 48②, [證據調查方法] 290-293, [檢控] 139 이하, [押收] 106 이하, [辯護] 299-300, 302-303-305-388-443, [檢後陳述機會] 303 (裁判의 告知) 42, 43. ③ 日刑新法 44

#### 第 52 條 【公判調書作成上の特例】

公判調書에는 第 48 條第 3 項乃至 第 7 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한다. 但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添어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를 記載하여야 한다.

#### 第 53 條 【公判調書의 署名等】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第 54 條 【公判調書의 整理等】

① 公判調書는 各公判期日後 5 日以内に 迅速히 整理하여야 한다.  
② 次回의 公判期日에 있어서 前回의 公判調書에 關한 主要事項의 要旨를 調書에 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그 變更을 請求하거나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要旨를 公判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은 그 請求 또는 異議에 對한 意見를 記載하게 할 수 있다.

#### 第 55 條 【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

①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被告人이 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  
③ 前2 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는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 第 56 條 【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證明力으로 證明한다.

① 起點이 消失되어 現存의 本이나 以上 原審判決은 그 本과 同等的인 事實事實을 認認調査할 機會를 준 것이다. (1950. 12. 4 283 刑上 9)

#### 第 56 條의 2 【公判調書의 錄取】

① 被告人, 辯護人 또는 其他者의 訊問에 있어서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그 問答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使用하여 이를 錄取할 수 있다.  
②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는 各自의 費用負擔으로 前項의 筆記 또는 錄取를 할 수 있다.

#### (本條新設 1961. 9. 1)

#### 第 57 條 【公務員의 書類】

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年月日과 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書類에는 間印하여야 한다.  
③ 公判調書에 關한 間印이 없는 事由안으로는 調書를 無効로 할 수 없다. (1960. 1. 29 4292 刑上 747)

#### 第 59 條 【非公務員의 書類】

非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年月日을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掌으로 한다.

#### 第 60 條 【送達받기 爲한 申告】

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所在地에 書類의 送達를 受領할 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住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所在地에 住居 또는 事務所 있는 者를 送達受任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 送達受任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③ 送達受任人의 選任은 該한 地域에 있는 各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④ 前3 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 61 條 【郵遞에 부치는 送達】

① 住居, 事務所 또는 送達受任人의 選任을 申告하여야 할 자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書類를 郵遞에 부치거나 其他 適當한 方法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② 書類를 郵遞에 부친 境遇에는 到達된 때에 送達된 것으로 看做한다.  
③ 外國人의 境遇: 外國人의 署名

#### 第 63 條 【公示送達의 原因】

① 被告人의 住居, 事務所나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② 被告人이 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場所에 있는 境遇에 다른 方法으로 送達할 수 없는 때에는 前項과 같다.

#### 第 64 條 【公示送達의 方式】

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② 公示送達은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 送達한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 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1961. 9. 1)

#### 第 65 條 【民事訴訟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民事訴訟法을 準用한다.

#### 第 66 條 【期間의 計算】

①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는 時로써 計算하는 것은 即時부터 起算하고 日, 月 또는 年으로 計算하는 것은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效과 拘束期間의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 日로 算定한다.  
②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書에 따라 計算한다.

#### 第 67 條 【法定期間의 延長】

①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 의 距離에 따라 海, 陸路 30 軒마다 1 日을 加한다. 그 距離의 全部 또는 發餘가 30 軒未滿일지라도 10 軒 以上이면 1 日을 加한다.  
② 外國 또는 特別 交通이 不便한 地域에 있는 者를 爲하여 大法院規則으로 前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適當한 期間을 定할 수 있다.

#### 第 73 條 【召喚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 第 74 條 【召喚狀의 方式】

① 召喚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出席日時, 場所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逃亡한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음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第 75 條 【拘束令狀의 方式】

① 拘束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拘禁할 場所, 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할 要旨를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第 76 條 【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 또는 檢事가 執行한다. 但 急遽를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 前項 但行의 境遇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書記官 또는 書記는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執行한다. (改正 1963. 12. 13)

#### 第 77 條 【拘束令狀의 執行의 節次】

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 法院 其他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② 第 77 條 第 3 項의 拘束令狀에 關하여는 이를 發付한 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③ 拘束令狀을 所持하지 아니한 境遇에 急遽를 要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訴事實의 要旨와 令狀이 發付되었음을 告知하고 執行할 수 있다.  
④ 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후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 第 78 條 【選送中의 假留置】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選送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가장 接近한 場所 또는 拘束令狀의 選送時로 假留置할 수 있다. (改正 1963. 12. 13)

#### 第 87 條 【拘束令狀의 通知】

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境遇에는 第 30 條 第 2 項에 規定한 者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 拘束日時, 場所,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要旨를 알려야 한다. (改正 1987. 11. 28)

#### 第 88 條 【拘束令狀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即時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第 89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0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1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2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3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4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5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6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7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8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99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0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1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2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3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4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5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6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7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8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09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10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11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12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 第 113 條 【拘束令狀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察를 受領할 수 있다.



④(法의 適用)91, (檢査)行刑62-18-19-64, 刑罰54-72, (文書檢査)行刑18-19, (監獄)行刑25-30 ※日刑訴80

**第90條【辯護人の依頼】** ①拘束된被告人은 法院, 辯護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二代理者에게 辯護士를 指定하여 辯護士의 選任을 依頼할 수 있다.  
②前項의 依頼를 받은 法院, 辯護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二代理者는 急速히 被告人이 指名한 辯護士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1963.12.13>

③(辯護人選任權)30, 憲12③, (被疑者에의 準用)209, (辯護人の 權利)34-36 ※日刑訴78

**第91條【非辯護人과의 接見, 交通】** 法院은 逃亡하거나 또는 罪證을 濺滅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과 第34條에 規定한 外의 他人과의 接見을 禁하거나 授受할 書類 其他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但 衣服, 糧食, 醫藥品의 授受를 禁止 또는 押收할 수 없다.

④(檢閱)行刑18③-62, 監獄(準用規定)209 ※日刑訴81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拘束期間은 2月를 限한다. 特히 繼續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審判次 2次에 限하여 決定으로 更新할 수 있다.  
②更新한 期間도 2月를 限한다.  
③第306條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審次가 停止된 期間은 前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1961.9.1>

④(期間計算)66, (上訴와 更新)105, (決定)37②③, (執行)403, (捜査機關拘束期間)202-203-205 ※日刑訴60

⑤(決定)에 對한 更新한 拘束期間의 更新이 있더라도 이러한 事實이 原審判決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處分(刑罰方法을 變更할 時에 이 되는 것)이라고는 當否가 되지 아니한다. (1968.8.23 68도832)

**第93條【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 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⑥(拘束事由)70, (決定)105, (決定)37②③, (準用規定)209, (檢査意見)97② ※日刑訴78

**第94條【保釋의 請求】**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 第2項에 規定한 者는 拘束된 被告人의 保釋을 請求할 수 있다.  
①(辯護人)30-33, (請求에 對한 決定)95-96, (保釋을 許하지 不)95, (職權保釋)96② ※日刑訴88

**第95條【必要的 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1973.12.20>  
1. 被告人이 死刑·無期 또는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때  
2. 被告人이 累犯이 該當하거나 常習犯罪 罪를 犯한 때  
3. 被告人이 罪證을 濺滅하거나 濺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改正 1973.1.25>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⑦(決定)37②③, (必要的 保釋)95, (上訴와 保釋)105, (檢査意見)97② ※日刑訴90

**第97條【保釋·拘束의 取消과 檢事의 意見】** ①保釋에 關한 決定을 할 때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檢事가 3日以内에 意見을 表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釋許可에 對하여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  
②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할 때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依한 境遇 以外에는 前項과 같다.

③保釋을 許可하는 決定을 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檢事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1973.1.25>

④(刑罰)55, (保釋에 對한 決定)94-96, (拘束의 取消에 對한 決定)93, (上訴와 保釋)105, (執行)403, (即時抗告)403-405-406 ※日刑訴92

**第98條【保釋과 保證金】** ①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被告人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保證金額을 定하여야 한다.  
1. 犯罪의 性質, 罪狀  
2. 證據의 證明力  
3. 被告人의 前科, 性格, 環境과 資産  
②法院은 被告人의 資産程度를 是의 能한 保證金額을 定할 수 없다.

③(保釋執行條件)100②, (保釋)102-103, (保證金)104, (保證金代納)100②③ ※日刑訴93①②

④(保釋保證金)은 請教書를 檢하여 被保釋者의 適當한 擔保를 有하고 그 担保를 담보함에 充分한 程度의 財力을 有한다. (1950.6.5 4283刑執1)

**第99條【保釋의 條件】**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고 其他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⑤(保釋)95-96, (住居)18-19, (住居의 自由)14, (制限違反과 保釋取消)102 ※日刑訴93③

**第100條【保釋執行의 節次】** ①保釋의 許可決定은 保證金額을 納入한 後가 아니면 執行하지 못한다.  
②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額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③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被告人 以外의 者의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額에 相當한 額을 許可할 수 있다.  
④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⑤(保證金額)102-103, (保釋)95-96, (保釋請求權)94

**第101條【拘束의 執行停止】** ①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을 親族·保護團體 其他 適當한 者에게 付託하거나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決定을 할 때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檢事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④憲法 第44條에 依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對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當然히 拘束令狀의 執行이 停止된다. <改正 1980.12.18.1987.11.28>

⑤前項의 釋放要求의 通告를 받은 檢察總長은 即時釋放을 指揮하고 그 事由를 受訴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73.1.25>

⑥(親族)767-777, (住居制限)99-102①, (上訴와 執行停止)105, (決定)403, (審判法院)105, (即時抗告)403-405-406, (國會議)44②, (釋放要求)99, (取消의 例外)102①, ②, (檢査總長)檢査6-14 ※日刑訴95

⑦(憲法)79條(第44)條 國會議員의 釋放決定에 對한 釋放要求가 있는 때에는 그 拘束令狀의 執行이 當然히 停止된다. (1986.8.1 4289刑刑143)

**第102條【保釋等의 取消과 保證金의 沒收】** ①被告人이 逃亡한 때, 逃亡 또는 罪證을 濺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 또는 住居의 制限 其他 法院이 定한 條件을 違反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을 取消할 수 있다. 但 前條 第4項에 規定한 拘束令狀의 執行을 停止는 그 會期中 取消하지 못한다. <改正 1973.1.25>

②保釋을 取消할 때에는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③(刑罰)56, (保釋)94-100, (住居制限)99-101, (法院이 定한 條件)99, (拘束의 執行停止)101, (上訴와 取消의 底)105, (決定)37②③, (執行)403, (保證金沒收의 執行)477, (準用規定)209 ※日刑訴96①②

④(判決確定前에 있어서의 保釋保證金의 沒收는 保釋取消決定과 同時에 行할 수 있다) 判例(1970.3.13 65도34)

**第103條【有罪判決 確定과 保證金의 沒收】**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後 執行하지 爲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하여야 한다.

⑤(保釋)94-100, (刑의 宣告)321, (判決確定)343-358-374-459, (刑)84, (執行을 爲한 召喚) 473, (沒收)102②, (保證金沒收의 執行)477 ※日刑訴96③

**第104條【保證金의 還付】**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收하지 아니한 保證金額을 請求한 날로부터 7日以内에 還付하여야 한다.

⑥(拘束取消)93, (保釋取消)102, (拘束令狀의 效力消滅)331 ※日刑訴91

**第105條【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上訴期間中 또는 上訴中의 事件에 關하여 拘束期間의 更新, 拘束의 取消, 保釋, 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停止의 取消에 對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는 때에는 原審法院이 하여야 한다.  
⑦(上訴期間)358-374, (拘束期間更新)92, (拘束取消)93, (保釋)95-102, (拘束執行停止)101-102 (訴訟記錄)47-54 ※日刑訴97

**第10章 押收와 搜索**

**第106條【押收】**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證據物 또는 沒收할 것으로 思料하는 物件을 押收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法院은 押收할 物件을 指定하여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③(調書作成)49-50, (證據保全請求)184, (證據物)291-292-294, (沒收物件)刑48①, (담배)58①, (賭博)183이하, (賭博)116이하, 憲12①, (特別規定)110-112 ※日刑訴99

**第107條【郵便物의 押收】** ①法院은 被告人이 發送한 物이나 被告人에게 對하여 發送된 郵便物 또는 電信에 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의 提出을 命하거나 押收할 수 있다.  
②前項 以外의 郵便物 또는 電信에 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은 被告人과 關係가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것에 限하여 그 提出을 命하거나 押收를 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但 審理에 妨礙할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④(證據保全請求)184, (押收)刑8⑥, (準用規定)219 ※日刑訴100

**第108條【任意提出物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物件은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⑤(押收物保管과 發棄)130-132, (調書作成)49-50-51② ※日刑訴101

**第109條【搜索】** ①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 物件 또는 住居 其他 場所를 搜索할 수 있다.  
②被告人이 年자의 身體, 物件, 住居 其他 場所에 關하여는 押收할 物件이 있음을 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搜索할 수 있다.

③(搜索)憲12③④, (刑罰)113-127-136-138, (搜索의 對象)110-125-126, (押收物件)106, (搜索作成)49-50, (證據保全請求)184, (準用規定)219 ※日刑訴102

**第110條【軍事上秘密과 押收】** ①軍事上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②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③(責任者의 參與)123, (準用規定)145

**第111條【公務上秘密과 押收】**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 當該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②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③(公務員의 職務上秘密과 義務)106, (責任者參與)123, (準用規定)219 ※日刑訴103

**第112條【公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 代理人, 公證人, 公證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劑師, 助産員, 看護員, 宗教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委託을 받아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으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押收를 拒否할 수 있다. 但 他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利益上 必要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1980.12.18>

④(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149, (業務上秘密)14, (辦理)21, (公證)5, (司法)14, (醫藥)19, (秘藏)刑317, (準用規定)219 ※日刑訴105

**第113條【押收·搜索令狀】** 公判廷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⑤(令狀)憲12③, (押收)106-107, (搜索)109-125, (令狀의 方式)114, (令狀의 執行)115, (令狀없이 하는 搜索)216-218 ※日刑訴106

**第114條【令狀의 方式】** ①押收, 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第75條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③(令狀의 檢査)106-107, (搜索場所)109, (準用規定)219 ※日刑訴107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押收, 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第83條의 規定은 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③(司法警察官吏)196-197, (管轄區域外에서의 執行과 그 補託)83, (武器使用)91, (準用規定)219, (受命法官·受託判事의 押收搜索)136 ※日刑訴108

**第116條【注意事項】** 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 다른 他人의 秘密을 保持하여야 하며 處분하는 者의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④(令狀의 執行)115 ※日刑訴93

**第117條【執行의 補助】**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求할 수 있다.

⑤(法院書記官吏)法執10⑤-⑦-12, (司法警察官吏)196-197, (司法官吏)21-5 ※日刑訴109

**第118條【令狀의 提示】** 押收, 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⑥(令狀)113, 憲12③, (準用規定)219 ※日刑訴110

**第119條【執行中의 出入禁止】** ①押收, 搜索令狀의 執行中에는 他人의 出入을 禁止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背한 者에게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終了時까지 看守者를 불일 수 있다.

③(執行中의 出入)127, (準用規定)219 (檢査)145

**第120條【執行과 必要한 處分】** ①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鍵錠을 열거나 閉封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③(押收物)106, (準用規定)138-145-219 ※日刑訴111

**第121條【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④(當事者參與)163-176, (令狀執行)115, (參與者의 通知)122, (準用規定)219 ※日刑訴113①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押收, 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의 日時와 場所를 前條에 規定한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但 前條에 規定한 者가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 또는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⑤(令狀의 執行)115, (緊急의 경우)206-216-217, (準用規定)145-219 ※日刑訴113②

**第123條【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參與】** ①公務所, 軍事用의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 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그 責任者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 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者를 參與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隣居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公務所)刑141-142-156-225-226-230-238, (例外規定)220 ※日刑訴114

**第124條【女子의 搜索과 參與】** 女子의 身體에 對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⑤(身體의 檢査)109, (女子의 身體檢査)141③, (準用規定)219 ※日刑訴115

**第125條【夜間執行의 制限】** 日出前, 日沒後에는 押收, 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는 記載가 없으면 그 令狀을 執行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⑥(新設)刑126, (檢査)刑143, (準用規定)219, (例外規定)220 ※日刑訴116

**第126條【夜間執行의 制限의 例外】** 다 음場所에서 押收, 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前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1. 賭博其他 風俗을 害하는 行爲에 常用된다고 認定하는 場所  
2. 旅館, 飲食店 其他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但 公開한 時間內에 限한다.

⑦(原則)125, (賭博)刑246-247, (風俗害)刑242-245, (例外)143③, (準用規定)219 ※日刑訴117

**第127條【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押收, 搜索令狀의 執行을 中止한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執行이 終了될 때까지 그 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들 수 있다.

⑧(公務所)刑141-142-156-225-226-230-238, (例外規定)220 ※日刑訴114

**第128條【證明書의 交付】** 搜索한 境遇에 證據物 또는 沒收한 物件이 없는 때에는 그 趣旨의 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⑨(刑罰)61, (押收)106, (搜索)109, (證據物)291-292-294, (沒收物件)刑48①, (담배)58①, (賭博)183이하, 高633, (準用規定)219 ※日刑訴119

**第129條【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其他 이에 準한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⑩(刑罰)61, (準用規定)219 ※日刑訴120

**第130條【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①運搬되는 保單에 不備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 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②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⑪(刑罰)62, (押收物)106, (保管)131-132, (廢棄)486③, 刑48③, (準用規定)219 ※日刑訴121

⑫(刑罰)54에 沒收한 第三者의 所有權에 影響이 미치지 아니한다. (1970.2.10 69도2051)

**第131條【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⑬(準用規定)219

⑭(刑罰)54에 沒收한 物이라고 해서 押收物에 對하여 當然히 押收의 表示가 되어 있다고 認定할 수 없다. (1977.4.12 76도3047)

**第132條【押收物의 代價保管】** 沒收하여야 할 押收物로서 破損, 破損 또는 腐敗의 念慮가 있거나 保單이 不備한 境遇에는 이를 賣却하여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⑮(通知)135, (沒收物件)刑48①, 高633, (準用規定)219 ※日刑訴122

⑯(刑罰)54에 沒收한 物의 代價를 賣却하여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1976.9.17 75도363)

**第133條【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①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押收物은 被告事件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 還付하여야 하고 證據에 供할 押收物은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또는 提出人의 請求에 依하여 假還付할 수 있다.  
②證據에 供할 目的으로 押收한 物件으로서 그 所有者 또는 所持者가 繼續使用하여야 할 物件은 寫眞攝影 其他 原形保存의 措置를 取하고 迅速히 假還付하여야 한다.

⑰(決定)37②③④-38-39, (還付)333①②, (假還付)333③, (民事訴訟)333④, (通知)135, (還付不能과 公告)486 ※日刑訴123

第134條【押收物處分の被害者還付】  
押收한 物處分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刑)333(2), (刑)337(2), 36, 39, (抗)403, (準用)219, 刑判124〕

第135條【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刑)333(2), (刑)337(2), 36, 39, (抗)403, (準用)219, 刑判124〕

第136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② 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 目的物 所在地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③ 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刑)333(2), (刑)337(2), 36, 39, (抗)403, (準用)219, 刑判124〕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가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拘束令狀)81-85, (準用)219-220, 123-127, 刑判126〕

第138條【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의 搜索에 準用한다.  
〔(執行中의 出入禁止)119, (執行中 必要한 處分)120, (責任者)123, (執行中 必要한 處分)127, 刑判127〕

## 第11章 檢證

第139條【檢證】 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刑)337(2), 49, 50, 51, 52, (公)100(1), 檢證 273, (證據保全)184, (刑)337(2), 36, 39, 119-123, 127, (檢事等 檢證)215-217, 刑判128〕

第140條【檢證과 必要한 處分】 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體의 破壞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檢査에의 準用)219, (身體의 檢査)141-142, (死體解剖)20-159-161-163, (墳墓의 發掘)160-162, (物體의 破壞)20-366, 刑判129〕

第141條【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② 被告人이 아닌 者의 身體의 檢査는 證據의 存在를 確證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③ 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④ 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檢査에의 準用)219, (成年)14, (準用)219, 刑判131, 刑判101〕

第142條【身體檢査와 召喚】 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인 者를 法院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被告人의 召喚)68, 刑判132〕  
第143條【時刻의 制限】 ① 日出前, 日沒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 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지 못한다. 但 日出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日沒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③ 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合)21, (夜間執行)125, (夜間執行 制限) 外)126, 刑判130〕

第144條【檢證의 補助】 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에게 補助를 命할 수 있다.  
〔(司法警察官)196-197, 司法官1-5, 刑判141〕

第145條【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乃至 第123條, 第127條와 第136條의 規定은 檢證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12章 證人訊問

第146條【證人의 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證人申請)273-294, 295, (鑑定)1179, (證據保全)184, (公)100(1), 證人訊問의 請求 221(2), (特別規定)147-149, (刑)337(2), 36, 39, 51, 刑判143〕

第147條【公務員과 證人資格】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알게 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 또는 當該公務所가 職務上 秘密에 屬한 事項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②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公務員)118, (證人의 資格)146, (公務上 秘密)60, 刑判144〕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人, 拒否】 누구든지 自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인 者가 刑事訴訟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음 事實이 發露될 虞인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親族, 戶主, 家主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던 者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公)100(1), 246, (親)767-777, (家)779, (戶)778, (法定代理人)26, 909-911, 928-929-938-959, (證言)150-160, 刑判147〕

第149條【業務上 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員, 看護員, 宗教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를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인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1980.12.18>  
〔(業務上의 秘密)317, (證言)150-160, (特別規定)14, (辨)21, (公)5, 刑判149〕

第150條【證言拒否事由의 確明】 證言을 拒否하는 者는 拒否事由를 確明하여야 한다.  
〔(證言)147-149, (憲)161, (日)5, (準)本)168, 刑判122〕

第151條【不出席과 過怠料等】 ① 召喚받은 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5萬圓 以下の 過怠料에 處하고 出席하지 아니함으로 生じた 費用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73.1.25>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召喚)152, (決定)37, (過)477, (即時)抗)339-405-410, (準)37, (抗)416, 刑判150〕

第152條【召喚不應과 拘引】 正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第153條【準用規定】 第73條, 第74條, 第76條의 規定은 證人의 召喚에 準用한다.  
第154條【構內證人의 召喚】 證人인 法院의 構內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證人)73, 74, 76-153, 刑判113〕

第155條【準用規定】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81條乃至 第83條, 第8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證人의 拘引에 準用한다.  
第156條【證人의 宣誓】 證人에게는 訊問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特別規定)159, (宣誓)157, (刑)337(2), 刑判154〕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법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를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④ 宣誓는 起立하여 踐履하야 한다.  
〔(宣誓書의 代)159, (刑)292, 3〕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한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爲證의 罪을 警告하여야 한다.  
〔(刑)337(2), 刑判152〕

第159條【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1. 16歲 未滿의 者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年)155-158, (證)159, (證人의 宣誓)156, (14歲)157, 宣誓能力이 있다고 볼 것이다. (1964.3.19.635328)〕

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인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近親者)148, (證言)148〕

第161條【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萬圓 以下の 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改正 1973.1.25>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決定)37, (過)477, (即時)抗)339-405-410, 刑判160〕

第161條의 2【證人訊問의 方式】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② 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누구도 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④ 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한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한 證人의 訊問方式는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1987.11.28>  
⑤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知하고 訊問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61.9.1>  
〔(刑)75-76-80-81, (被告人)訊問의 方式)287, (刑)297(2)〕

第162條【個別訊問과 對質】 ① 證人訊問은 各證人이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② 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庭한 때에는 退庭을 命하여야 한다.  
③ 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④ 削除 <1961.9.1>  
〔(訊)48-312(2), (證言)161, (被告人의 退庭)297, (當事者의 參與)163, 刑判123-124〕

第163條【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 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③ 削除 <1961.9.1>  
〔(訊)164, (押收)搜索과 當事者參與)121-122, 刑判157〕

第164條【訊問의 請求】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에 對하여 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 不利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當事者)參與)163, (公)100(1), 訊問의 請求 221(2), 刑判159〕

第165條【證人의 法廷外 訊問】 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意見를 묻고 法廷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公)153, 73-74, 76-152, (當事者의 參與)訊問權)163, 刑判158〕

第166條【同行命令과 拘引】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② 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拘引)352, 73-75-77-81-83-85, (決定)37, 刑判162〕

第167條【受命法官, 受託判事】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第168條【證人의 旅費, 日當, 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의 規定한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과 宿泊料를 請求할 수 있다. 但 正當한 事由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者는 例外로 한다.  
〔(費用)刑判費)1-2(2), (拒否)161-148-149(少年法에 準用)138(2), 刑判164〕

## 第13章 鑑定

第169條【鑑定】 法院은 學識經驗 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鑑定)221-273-297, (調査)作成)48, (鑑定)報告)171, (鑑定)許可와 過怠料)177-161, (證據)能力)311, (宣誓)170, (法定)外의 鑑定)172, (鑑定人의 參與)權)174, (鑑定)證人)179, 刑判165〕

第170條【宣誓】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 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宣誓)157-158, (鑑定)證人)152-153, (宣誓)拒否와 過怠料)177-161, 刑判166, 刑判168〕

第171條【鑑定報告】 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② 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③ 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鑑定)訊問)48-50, (鑑定)311-312, 刑判129〕

第172條【法院外의 鑑定】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體를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③ 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이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即時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④ 前項의 留置에 關하여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改正 1973.1.25>  
⑤ 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한 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 수 있다. <新設 1973.1.25>

第173條【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拘引)에 關한 規定)152-155-166, 刑判171〕

第174條【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審判과 證據物을 閲覧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② 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審)147-48-54, (證據)106-291-292-294, (被告人)訊問)287-288, (證人)訊問)146이하, 刑判114〕

第175條【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鑑定)에 必要한 處分)173〕

第176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 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通知)122, (鑑定)人)作成의 意見書 및 鑑定)結果가 科判의 이)證據價値가 있다고 認定된다. (1978.4.11.7352761)〕

第177條【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拘引)에 關한 規定)152-155-166, 刑判171〕

第178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體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體,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 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 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刑)判)89, (身體)檢査)141-124-109, (墳墓)發掘)刑判160, (物體)破壞)刑判366, (準用)規定)221의 4(準)刑判168, (被)尋)問에 對한 鑑定)의 濫用이 있는 境遇에 鑑定)結果에 基據한 判決은 濫用이다. (1960.2.29.4292刑上544)〕

第179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審判과 證據物을 閲覧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 發問할 수 있다.  
〔(審)147-48-54, (證據)106-291-292-294, (被告人)訊問)287-288, (證人)訊問)146이하, 刑判114〕

第180條【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鑑定)에 必要한 處分)173〕

第181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 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通知)122, (鑑定)人)作成의 意見書 및 鑑定)結果가 科判의 이)證據價値가 있다고 認定된다. (1978.4.11.7352761)〕

第182條【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拘引)에 關한 規定)152-155-166, 刑判171〕

第183條【鑑定에 必要한 處分】 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體의 破壞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 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體,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 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④ 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刑)判)89, (身體)檢査)141-124-109, (墳墓)發掘)刑判160, (物體)破壞)刑判366, (準用)規定)221의 4(準)刑判168, (被)尋)問에 對한 鑑定)의 濫用이 있는 境遇에 鑑定)結果에 基據한 判決은 濫用이다. (1960.2.29.4292刑上544)〕

第184條【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鑑定)에 必要한 處分)173〕

第185條【當事者의 參與】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② 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通知)122, (鑑定)人)作成의 意見書 및 鑑定)結果가 科判의 이)證據價値가 있다고 認定된다. (1978.4.11.7352761)〕

第178條【旅費,鑑定料等】鑑定人是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外에 鑑定料와 善當金의 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①【旅費】刑罰法111, [日當]刑罰法211, [日當을 支給하고 出庫]刑罰法211, [請求時期]刑罰法5, [附屬刑罰]刑罰法9, [少年法에 準用]少年法38

第179條【鑑定證人】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①【證人과 鑑定人取據上 差異】177, [鑑定料와 善當金辨償請求]178

### 第14章 通譯과 翻譯

第180條【通譯】國語에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①【國語】法廷57, [通譯]法廷57, [國語通譯]刑罰法154, [檢事等의 通譯]221, [當事者의 申請]294

②【被告人이 中國人이나 할지라도 國語를 解得하는 場合에는 通譯을 命하지 않다가 하여 잘못이 없나 할 수 있다. (1966.12.27 65도1535)

第181條【雙者의 通譯】雙者 또는 單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①【雙者의 申請】刑罰法294

第182條【翻譯】國語인 文字 또는 符號는 翻譯하게 하여야 한다.

①【國語를 翻譯】刑罰法154, [檢事等의 翻譯]221, [公判日의 翻譯]273, [當事者의 申請]294

第183條【準用規定】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翻譯에 準用한다.

①【刑罰法2-4-5-9

### 第15章 證據保全

第184條【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①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 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회公判期日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 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③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④【押收·搜索】116-138, [檢證]139-145, [證人訊問]146-168, [鑑定]169-179, [判事의 處分]116 이하-119 이하-139 이하-145 이하-169 이하, [疎明]201 ② ※刑罰法179

⑤【證據保全節次에 關하여서 檢事는 參與權이 있다. (1965.12.10 65도826)

第185條【書類의 開覽等】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 證據物을 開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①【書類開覽等】35, [證據保全請求]184 ※刑罰法180

### 第16章 訴訟費用

第186條【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①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에게 責任지음事由로 發生된 費用은 刑의 宣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③【訴訟費用】刑罰法181, 刑罰法181-192, 194, 212 [刑을 宣告하지 않는 境遇]322-325-328 ※刑罰法181 ②

第187條【共犯의 訴訟費用】共犯의 訴訟費用은 共犯人에게 連帶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①【共犯】刑罰法30-34, [連帶負擔]民413-427 ※刑罰法182

第188條【告訴人等의 訴訟費用負擔】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無罪 또는 免刑의 判決을 받은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그 者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①【告訴】223-233, [告發]234-235-224, [無罪]325 [免刑]326, [故意]刑113-156 ※刑罰法183

第189條【檢事의 上訴取下와 訴訟費用負擔】  
檢事만이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訴訟費用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하지 못한다.

①【上訴棄却】360-361 이하-362-380-381, [上訴의 取下]349-351, [再審請求棄却]433-434-436, [再審請求의 取下]429 ※刑罰法181 ③

第190條【第三者의 訴訟費用負擔】  
檢事 아닌 者가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者에게 그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①【檢事 아닌 者가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者에게 그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1966.12.27 65도1535)

②【被告人인 者가 被告人이 提起한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③【特別司法警察官吏】司法官吏, 關稅211, 軍艦55 ④, 勤勞103 ⑤, [檢事의 選擇]196, 檢察5-35, [執行規則]司法警察規則 ※刑罰法190

第191條【訴訟費用負擔의 裁判】  
①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本案의 裁判에 關하여 上訴하는 境遇에 限하여 不服할 수 있다.

③【被告人費用負擔】186-187 ※刑罰法185

第192條【第三者負擔의 裁判】  
①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 아닌 者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決定】37, [被告人以外者의 費用負擔]188, 212 [即時抗告]339-405-407-410

第193條【裁判에 依하지 아니한 節次終了】  
①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때에는 事件의 最終係屬法院이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裁判에 依하지 않는 境遇】349-351-429, [決定]37 ※刑罰法187

第194條【負擔額의 算定】  
訴訟費用의 負擔을 命하는 裁判에 그 金額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執行을 指揮하는 檢事가 算定한다.

①【費用負擔裁判】191-193, [執行指揮]460, [執行停止]472, [執行免除申請]487, [異議申請]489 ※刑罰法188

### 第2編 第1章

#### 第1章 檢査

第195條【檢査의 檢査】  
檢査는 犯罪의 嫌疑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檢査하여야 한다.

①【檢査】檢察5, [檢査權範圍]檢察4, [檢査指揮]196, [公訴權]216-218, [裁判執行]460, [被疑者의 喚問]200, [被疑者의 拘束]201, [行政協定과 檢査協力]行政協力

②【罪의 疑念을 檢査하는 是로 非難한 別開問題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被疑者의 基本的人權이 侵權된 것이라고는 보지 어렵다 할 것이다. (1963.9.2 63도190)

第196條【司法警察官吏】  
①檢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指揮를 받아 檢査를 하여야 한다.

②警査, 巡警은 司法警察吏로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指揮를 받아 檢査와 補助를 하여야 한다.

③前2項에 規定한者 以外에 法律로써 司法警察官吏를 定할 수 있다.

④【檢査의 指揮】檢察5-35, [搜查權]檢察30 ③, [特別司法警察官吏]197, 少年刑罰193

⑤【司法警察吏에게서 緊急拘束의 權限이 있다고 한 것이다. (1965.1.19 64도740)

第197條【特別司法警察官吏】  
森林, 海事, 專賣, 稅務, 軍檢査機關 其他特別한 事項에 關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할者와 其職務의 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①【特別司法警察官吏】司法官吏, 關稅211, 軍艦55 ④, 勤勞103 ⑤, [檢事의 選擇]196, 檢察5-35, [執行規則]司法警察規則 ※刑罰法190

第198條【注意事項】  
檢査, 司法警察官吏 其他職務上 檢査에 關係하는 者는 秘密을 嚴守하여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檢査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①【檢査事實과 公判】刑罰法126, [公判上秘密保護]刑罰法127 ※刑罰法196

第198條의 2【檢査의 拘束場所 監査】  
①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拘束의 有無를 調查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회以上 管下 警察局, 警察署의 被疑者의 拘束場所를 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②檢査는 被拘束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 이라고 疑心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即時 事件을 檢査에 送致할 것 을 命하여야 한다.

③【檢査】70-75-77-78-83, 212 [送致]202

第199條【檢査와 必要한 調查】  
①檢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調查를 할 수 있다. 但 強制處分은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檢査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他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③【特別規定】201-212-214-218-221-184, [照會]272

第200條【被疑者의 出席要求와 陳述 拒否權의 告知】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檢査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의 出席을 要求하여 陳述을 들을 수 있다.

②前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對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 려야 한다. (改正 1961.9.1)

③【被疑者의 召喚】68, [召喚不應과 拘束] 201 ④-71-72, [陳述拒否權]289, [訊問]244-312-314-317-318 ※刑罰法198

第201條【拘束】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 고 疑心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 地方法院 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 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但 5萬以下의 罰金·拘束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改正 1980.12.18)

②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④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1973.1.25, 1980.12.18)

⑤【拘束令狀】憲法123, 刑罰法75, [拘束事由]70, [少年의 境遇]少年法49 ※刑罰法199

⑥【拘束令狀의 申請에 對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1957.12.27 4290刑執8, 同前1958.3.14 4290刑執9)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①【被疑者拘束】205-201 ④, [司法警察官]196-197 [拘束期間의 延長]國條19 ※刑罰法203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①【被疑者拘束】201 ④, [期間計算]66 ④, [檢事·司法警察官]195-196 ④, [司法官吏(外國規定)國條20 ④]

②【同一事件으로 再拘束된 境遇라도 그것만으로 自體가 無效라고 할 수 없다. (1966.11.22 66도1288)

第204條【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報告】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拘束하지 아니하거나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 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①【令狀發付】73, [被疑者釋放]201 ⑤-202-203-207 ②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 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檢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期間計算】66 ④, [拘束期間]203 ※刑罰法208 ②, ※刑罰法192

第206條【緊急拘束】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였다 고 疑心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 第1項 第2號, 第3號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 緊急을 要하여 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事由를 告하고 令狀 없이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改正 1973.12.20)

②司法警察官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에는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但 特別히 急速을 要하여 미리 指揮를 받을 수 없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即時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73.1.25)

③【令狀王條】憲法123, [緊急拘束事由]70 ④-1, [注意事項]司法警察規則27, [檢事·司法警察官]195-196 ④, [司法官吏, [少年의 特別]少年法13, [緊急處分]216-218, [國會議員의 不逮捕權]憲法44, [國用規定]209-71-72-75-81 ④-82-83-85-91-93 ※刑罰法207

④【法定節次 없이 被疑者를 拘束한 警察署保護室에 拘束한 境遇에는 職權을 濫용하여 人權을 不法으로 侵害하는 有하다 고 보아야 한다. (1971.3.9 70도2406)

第207條【緊急拘束과 令狀發付期間】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拘束한 境遇에 拘束을 繼續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地方法院判事는 市 또는 郡에서는 拘束한 때로부터 48時間以內에, 其他의 市 또는 郡에서는 72時間以內에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61.9.1)

②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被疑者를 即時 釋放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釋放된者는 拘束令狀 없이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拘束하지 못한다.

④【緊急拘束】206, [再拘束의 禁止]208, [期間計算]66 ④ ※刑罰法204 ④ ②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1個의 目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 行爲는 同一한 犯罪事實으로 看做한다. (改正 1973.1.25)

③【刑罰法99, [被疑者의 釋放]201 ⑤-202-203-207 ②, [檢事·司法警察官]195-196 ④, [司法官吏(外國規定)國條20 ④]

④【同一事件으로 再拘束된 境遇라도 그것만으로 自體가 無效라고 할 수 없다. (1966.11.22 66도1288)

第209條【準用規定】  
第71條, 第72條, 第75條, 第81條 第1項 本文,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乃至 第91條, 第93條, 第101條 第1項, 第102條 第1項 本文(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被疑者 拘束에 準用한다. (改正 1973.1.25)

第210條【司法警察官의 管轄區域外의 檢査】  
司法警察官이 管轄區域外에서 檢査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의 囑託을 받아 檢査할 때에는 管轄 地方檢察廳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第206條, 第212條, 第214條, 第216條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를 할 수 있다. (改正 1961.9.1)

①【司法警察官】196, [司法官吏, 關稅]211, [管轄區域外]司法官吏6, [管轄區域外에서의 執行]83 ②-115 ②-155-209

第211條【現行犯과 準現行犯】  
①犯罪의 實行中이거나 實行의 即後인者를 現行犯이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者는 現行犯으로 看做한다.

1. 犯人으로 呼稱되어 追跡되고 있는 때

2. 贓物이나 犯罪에 使用되었다고 認定한 充分한 兇器其他의 物件을 所持하고 있는 때

3. 身體 또는 衣服類에 顯著한 證據가 있을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逃亡하려 하는 때

③【現行犯逮捕】212-214, 憲法123 ③ ※刑罰法212 ④, [拘束令狀]73-75-474, [拘束의 取消]93, [拘束執行停止]1101

第212條【現行犯의 逮捕】  
現行犯은 누구든지 令狀 없이 逮捕할 수 있다.

①【逮捕】憲法123 ③, [司法警察規則]31, [國會議員의 犯罪逮捕]國條148, [逮捕後措置]213, [刑罰事件과 不逮捕]214, [令狀에 依하지 아니하는 強制處分]216-218 ※刑罰法213

第212條의 2 削除 (1987.11.28)

第213條【逮捕된 現行犯의 引渡】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 아닌 者가 現行犯을 逮捕한 때에는 即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請求하여 發付받은 令狀에 依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이 現行犯의 引渡를 받

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 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 있다.

③削除 (1987.11.28)

④【現行犯의 逮捕】212, [刑罰事件]214 ※刑罰法214-215 ②

第213條의 2【準用規定】  
第72條, 第87條 내지 第90條 및 第207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現行犯을 逮捕하거나 現行犯을 引渡받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87.11.28)

第214條【輕微事件과 現行犯逮捕】  
5萬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에 對하여는 犯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①拘束令狀에 依하여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姊妹, 戶主, 家族이나 同居人 또는 雇傭主는 管轄法院에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②請求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院은 第3項의 審問없이 決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拘束令狀의 發付에 대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共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檢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遲滯없이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檢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查하여 그 請求가 理由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⑤檢事·辯護人·請求人은 第3項의 審問期日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⑥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어 法院은 共犯의 分離審問 기가 搜査上의 秘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採取하여야 한다.

⑧拘束令狀을 發付한 官은 第3項의 審問·調查·決定에 關하지 못한다. 다만, 判事가 1인인 地方法院支院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法院이 檢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受容한 때로부터 決定을 한 날까지의 期間은 第205條·第203條 및 罪證을 選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新設 1980.12.18)

⑩【現行犯의 引渡】212-214, 憲法123 ③ ※刑罰法212 ④, [拘束令狀]73-75-474, [拘束의 取消]93, [拘束執行停止]1101

第214條의 3【再拘束의 制限】  
第214條의 2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釋放된 被疑者가 逃亡하거나 罪證을 選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新設 1980.12.18)

①【刑罰法99, [再拘束의 制限]208

第215條【押收·搜索·檢證】  
檢事는 犯罪檢査에 必要한 때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發付받은 令狀에 依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②司法警察官이 犯罪搜查에 必要한 때에는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地方法院判事가 發付한 令狀에 依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改正 1980.12.18)  
③【**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1條, 第206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拘束하는 境遇 또는 現行犯을 逮捕하는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築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搜查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犯行中 또는 犯行直後の 犯罪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았을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事後에 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61.9.1)  
④【**緊急處分**】 220. ①【**被疑者의 拘束**】 201. 【**被疑者의 檢證**】 206. 【**現行犯의 逮捕**】 211~212. ②【**拘束令狀의 執行**】 81~83, 85.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 못한 場合**】 207. 【**時制制限**】 125~126, 143~219 等 日刑刑220  
⑤【**司法警察官의 事務取扱에 行한 檢證이 事件發生地 犯罪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判事의 令狀없이 行한 것인 때에는**, 이는 刑事訴訟法 第216條 第3項에 依한 檢證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犯行中 緊急을 要한 檢證이라 할 것임이다. 이러한 檢證은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있다. (1984.3.13 83도3006)  
⑥【**同前**】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6條의 規定에 依하여 拘束할 수 있는 者의 所有,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에 對하여는 第207條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②前條第1項第2號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押收한 物은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 못한 때에는 即時 還付하여야 한다. 但 押收를 繼續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押收, 搜索令狀의 發付를 받아야 한다.  
③【**押收**】 106~108, 刑48④. 【**押收調査**】 司法警察官 第50. 【**令狀**】 219~114. (刑事訴訟法 147)  
④【**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⑤【**司法警察官은 所有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으로 보기 어려운 物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1969.8.30 69도46)  
⑥【**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 第1項本文, 第2項, 第118條乃至 第135條,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 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司法警察官이 第132條乃至 第134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80.12.18)  
⑦【**遺留한 物을 押收하는 第三者에게 保管하게 하는 境遇에 對한 檢證**】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所有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1969.8.30 69도46)  
⑧【**第220條【緊急處分]**】 第216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緊急을 要

하는 때에는 第123條第2項, 第125條의 規定에 依함을 要하지 아니한다.  
⑨【**第221條【第三者의 出席要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搜查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아닌 者의 出席을 要求하여 陳述을 들을 수 있고 鑑定, 通譯 또는 翻譯을 委嘱할 수 있다. (改正 1961.9.1)  
⑩【**被疑者의 出席要求**】 200. 【**證人의 出席**】 146 이하, 245. 【**鑑定**】 169 이하, 【**通譯·翻譯**】 180~183. 【**費用**】 刑刑24. 4~5. 9. 等 日刑刑223  
⑪【**刑事訴訟法 第221條 第2項에 依한 證人의 出席에 關한 要件이 아니므로 出席의 機會가 賦與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違法이라고 할 수 없다.** (1981.9.22 81도1944)  
⑫【**第221條 第2項에 依한 證人의 出席에 關한 要件이 아니므로 出席의 機會가 賦與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違法이라고 할 수 없다.** (1981.9.22 81도1944)  
⑬【**第221條의 2【證人의 出席要求]**】 ① 犯罪의 搜查에 關해서는 犯罪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 限하여 檢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의 出席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任意의 陳述을 한 者가 公判期日에 前의 陳述과 다른 陳述을 할 意圖가 있고 그의 陳述이 犯罪의 證明에 關하여 不利한 影響을 미칠 虞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에 限하여 檢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의 出席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疎明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は 證人의 出席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⑤判事は 搜查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의 出席에 參與하게 할 수 있다.  
⑥判事は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의 出席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 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73.1.25)  
⑦【**第221條의 2【證人의 出席要求]**】 267~269, 271~275, 276~278, 279. ⑧【**證人의 出席**】 146 이하. ⑨【**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 146~168. ⑩【**被疑者의 出席要求**】 221條 第2項, 第1項에 依하여 證人의 出席을 請求를 하고, 判事が 그 請求를 允諾하고 인정하여 同項 第221條 第2項에 따라 第1回 公判期日에 證人의 出席을 한 이상 그 證人의 出席을 證據能力이 있다. (1976.9.28 76도2143)  
⑪【**第221條의 3【鑑定, 通譯, 翻譯의 委任]**】 ①檢事는 第123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嘱하는 境遇에 第172條 第3項의 規定이 必要한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1980.12.18)  
②判事は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 第172條 및 第172條 第2項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3.1.25)  
③【**第221條 第3項의 規定이 必要한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1980.12.18)  
④【**第221條의 4【鑑定에 必要한 處分許可]**】 ①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받은 者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 第173條 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事가 하여야 한다.  
③判事は 第2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④第173條 第2項,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에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3.1.25, 改正 1980.12.18)  
⑤【**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變死者 또는 變死者의 疑心 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檢視로 犯罪의 疑念을 認定하고 緊急을 要할 때에는 令狀없이 檢證을 할 수 있다. (新設 1961.9.1)  
③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新設 1961.9.1)  
④【**檢視期日**】 司法警察官 第33-35. 【**檢視비용**】 刑刑163. 刑刑1. 等 日刑刑229  
⑤【**第223條【告訴權者】** 犯罪로 인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⑥【**告訴의 制限**】 224. 【**非被害者인 告訴權者**】 225-227. 【**告訴期間**】 230. 【**告訴方式**】 237-238. 【**親告罪의 告訴權者**】 232. 【**代理告訴**】 236 等 日刑刑230  
⑦【**親告罪에 있어서 被害者가 檢事官에게 被害者에 對한 處分을 요구하는 意思表示의 方法에 關한 限制이 없으므로 檢事官에게 告訴의 意思有無를 確認하였을 때에는 適法하다.** (1956.1.31 4288刑上370)  
⑧【**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⑨【**直系尊屬**】 刑刑768. 【**告訴權者指定**】 228. 【**共犯와 告訴**】 233. 【**告訴에 準用**】 235  
⑩【**第225條【非被害者인 告訴權者]**】 ①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②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姊妹는 告訴할 수 있다. 但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못한다. 刑刑116. ⑪【**法定代理人**】 刑刑911-916, 918-920, 938. 【**告訴權者**】 223-226, 227. 【**告訴의 方式**】 237 ⑫【**直系尊屬, 兄弟姊妹**】 刑刑767-769 等 日刑刑231  
⑬【**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는 告訴는 效力이 없는 것이다.** (1956.6.28 4288刑上109)  
⑭【**第226條【同前]**】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害者의 親族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⑮【**法定代理人**】 刑刑909-911, 928-938. 【**親族**】 刑刑767 이하 等 日刑刑232  
⑯【**孩子關係는 戶籍에 入り되어 있는 眞實한 關係인이 子의 出生으로 法律上 當然히 發生하는 것이므로 生母와 子의 子 사이에서 法律上 眞實한 親屬關係가 있다 할 것인바, 被疑者의 生母가 被疑者와 그 間に 何種의 強制執行 等 犯罪事實에 對하여 告訴를 提起한 것은 刑事訴訟法 第226條 第1項에 規定된 親族에 限하여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에 對한 適法한 告訴라 할 것이다.** (1986.11.11 86도1982)  
⑰【**第227條【同前]**】 死者의 名譽를 毀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⑱【**刑刑116. 【親族**】 刑刑767 이하. 【**死者의 名譽毀損**】 刑刑308-312 等 日刑刑233  
⑲【**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 10日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⑳【**刑刑116. 【親告罪**】 刑刑241-316, 317-297-300-302-305-288④, 292④, 293④, 291-308-311-328 ②, ③, 329-332, 354-361, 365. 【**告訴할 者**】 223-225-227. 【**期間計算**】 66 等 日刑刑234  
㉑【**第229條【配偶者의 告訴]**】 ① 刑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를 提起한 後가 아니면 告訴할 수 없다.  
②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를 取下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  
③【**刑刑116 ①【婚姻解消**】 刑刑834. 【**離婚訴訟**】 刑刑241. 【**告訴**】 刑刑834 이하. ④【**取消**】 刑刑236-237. 【**告訴의 取消**】 刑刑236-237 等 日刑刑237  
④【**通譯告訴時 期間計算請求를 提起하였다 하여**

하도 그 請求가 撤回되어 確定된 경우에는 그 以後 그 取消告訴는 不適法하게 된다. (1985.12.10 85도2139)  
㉑【**第230條【告訴期間]**】 ① 親告罪에 對하여는 犯罪을 알게 된 날로부터 6個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但 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 起算한다.  
② 刑法 第291條의 罪로 略取, 誘引된 者가 婚姻을 한 境遇의 告訴는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날로부터 前項의 期間이 進行된다.  
③【**刑刑291條의 罪로 略取, 誘引된 者가 婚姻을 한 境遇의 告訴는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날로부터 前項의 期間이 進行된다.** (1985.7.9 84도2249)  
④【**刑刑228條, 【期間計算**】 66. 【**犯人**】 刑刑30-32 ⑤【**婚姻의 無效, 取消**】 刑刑81-82-85. 【**裁判確定**】 刑刑343-358-374 等 日刑刑235  
⑥【**親告罪인 罪로 略取, 誘引된 者에 있어서는 犯罪을 알게 된 날이 아닌 犯人이 被害者와 婚姻을 締結한 時點을 基準로 하여 告訴를 提起할 수 있는 日로부터 起算한다.** (1985.7.9 84도2249)  
㉑【**第231條【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1人의 期間의 起算은 他人의 告訴에 影響이 없다. ②【**告訴權者**】 223-225-227. 【**期間**】 66, 230 等 日刑刑236  
㉑【**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 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③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있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取消時點**】 236-239. 【**告訴者의 意思**】 110-283-307-309-260-266-312 ⑤【**日刑刑237**】 刑刑307-309-260-266-312 ⑥【**日刑刑237**】 刑刑307-309-260-266-312 ⑦【**日刑刑237**】 刑刑307-309-260-266-312  
⑧【**親告罪에 있어서 被害者가 檢事官에게 被害者에 對한 處分을 요구하는 意思表示의 方法에 關한 限制이 없으므로 檢事官에게 告訴의 意思有無를 確認하였을 때에는 適法하다.** (1956.1.31 4288刑上370)  
⑨【**第233條【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은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⑩【**刑刑241-312-318-328-296-306-344-354-361-365. 【告訴權者指定**】 228. 【**告訴의 取消**】 232-236 等 日刑刑238  
⑪【**相對的 親告罪에 있어서의 被害者의 告訴權은 親屬關係가 없는 共犯者에게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1964.12.15 64도81)  
㉑【**第234條【告訴]**】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想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 公務員은 그 職務을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想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③【**刑刑163. 【親告罪**】 刑刑200-228-232. 【**特定犯罪**】 16,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㉑【**第234條【告訴]**】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想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② 公務員은 그 職務을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想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③【**刑刑163. 【親告罪**】 刑刑200-228-232. 【**特定犯罪**】 16,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② 被告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3. 罪名

4. 適用法條

④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⑥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⑧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⑩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⑫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⑬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⑭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⑮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⑯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⑰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⑱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⑲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⑳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㉑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㉒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㉓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㉔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㉕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㉖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㉗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㉘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㉙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㉚ 公訴事實의 記載은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㉛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의 方式로 記載할 수 있다.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以内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即時 그趣旨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⑤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⑥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⑦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⑧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⑨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⑩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⑪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⑫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⑬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⑭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⑮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⑯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⑰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⑱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⑲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⑳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㉑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㉒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㉓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㉔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㉕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㉖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㉗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㉘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㉙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㉚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㉛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以内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即時 그趣旨을 通知하여야 한다.

③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⑤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⑥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⑦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⑧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⑨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⑩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⑪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⑫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⑬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⑭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⑮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⑯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⑰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⑱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⑲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⑳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㉑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㉒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㉓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㉔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㉕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㉖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㉗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㉘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㉙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㉚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㉛ 檢事는 不告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向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 7日以内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199-201-207-215-220-221-241-245, [檢査의 指揮]196①②, 檢査5, 國(公務從事者)刑罰122 이하, 國(釋士)刑罰2, ②-4 ※ 日刑罰268

第3章 公判

第1節 公判準備과 公判節次

第266條【公訴狀副本의 送達】 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 公判期日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第267條【公判期日의 指定】 ① 裁判長은 公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② 公判期日에는 被告人, 代表者 또는 代理人를 召喚하여야 한다.

第268條【召喚狀 送達의 豫制】 法院의 構內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判期日을 通知한 때에는 召喚狀 送達의 效力이 있다.

第269條【第1回 公判期日의 豫豫期間】 ① 第1回 公判期日을 召喚狀의 送達後 5日以上の 豫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② 被告人이 異議없는 때에는 前項의 豫豫期間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第270條【公判期日의 變更】 ① 裁判長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② 公判期日變更申請을 棄却한 命은 送達하지 아니한다.

第271條【不出席事由 資料의 提出】 公判期日에 召喚 또는 通知書를 받은 者가 疾病 其他의 事由로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醫師의 診斷書 其他의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72條【公務所에 對한 照會】 ①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務所 또는 公關團體에 照會하여 必要事項의 報告 또는 그 保管書類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第273條【公判期日前의 證據調査】 ① 法院은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期日前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 檢證, 鑑定 또는 翻譯을 命할 수 있다.

② 裁判長은 部員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第274條【當事者의 公判期日前의 證據提出】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公判期日前에 書類나 物體等 證據로 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改正 1961.9.1)

第275條【公判廷에서의 審理】 ① 公判期日에는 公判廷에서 審理한다. ② 公判廷은 判事와 書記官 또는 書記가 列席하고 檢事가 出席하여 開廷한다. ③ 檢事의 座席은 辯護人의 座席과 對等하여 被告人은 裁判長의 正前에 對面한다.

第276條【被告人의 無罪推定】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新設 1980.12.18)

第277條【被告人의 出席權】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開廷하지 못한다. 但 被告人이 法人인 境遇에는 代理人를 出席하게 할 수 있다.

第278條【檢事の 不出席】 檢事가 公判期日의 通知를 2回以上 받고 出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檢事의 出席없이 開廷할 수 있다.

第279條【裁判長의 訴訟指揮權】 公判期日의 訴訟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第280條【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의 禁止】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못한다. 但 裁判長은 被告人의 暴行 또는 逃亡을 防止하기 위하여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第281條【被告人의 在廷義務, 法廷警察權】 ① 被告人은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지 못한다. ② 裁判長은 被告人의 退廷을 制止하거나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282條【必要的 辯護】 死刑,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辯護人없이 開廷하지 못한다. 但 判決만을 宣告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283條【國選辯護人】 第33條各號의 境遇 또는 前條의 境遇에 辯護人이 없거나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第284條【人定訊問】 裁判長은 被告人의 姓名, 年齡, 本籍, 住居와 職業을 물어서 被告人이 임의로 眞實함을 認諾하였는지 여부를 訊問한다. (新設 1973.7.10 73노1167)

第285條【檢事の 冒頭陳述】 ① 檢事は 公訴狀에 依하여 起訴의 要旨을 陳述하여야 한다. ② 第278條의 境遇에는 公訴狀에 記載된 事項에 依하여 檢事の 起訴要旨의 陳述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第286條【被告人의 陳述權】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을 주어야 한다.

第287條【簡易公判節次의 決定】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公訴事實에 對하여 簡易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하여야 한다. 但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의 合議部가 第1審으로 審判할 事件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73.1.25)

第288條【3】 決定의 取消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여 被告人의 自白이 眞實함을 認諾하지 아니하고 認諾되거나 簡易公判節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檢事의 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1973.1.25)

第287條【被告人訊問의方式】①檢事와 辯護人은 順次로 被告人에게 對하여 公訴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直接訊問할 수 있다.

②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③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 (改正 1961.9.1)

刑訴法129. (陳述拒否權)289. (公訴事實)254④  
 (陳述拒否權)161외2

第288條 刑罰 (1961.9.1)

第289條【被告人의 陳述拒否權】被告人은 各各의 訊問에 對하여 陳述를 拒否할 수 있다.

刑訴法129. (陳述拒否權)200②. (陳述의 任意性)309  
317 審日刑訴311  
被告人이 故意로 陳述를 拒否하여 身體를 衰弱하게 하고, 公訴에 出항하여서도 裁判長의 訊問에 對하여 陳述不能의 事實을 認할 能 없도록 陳述의 阻礙을 行한 경우, 刑訴法 第289條 (刑罰 第366條)의 規定에 準하여 處罰한다. (1955. 7. 5 4288 刑上54)

第290條【證據調査】證據調査는 被告人에 對한 訊問이 終了한 뒤에 하여야 한다. 但 必要한 때에는 訊問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改正 1961.9.1)

刑訴法129. (證據調査)287. (調査方式)292-293-297. (異議申請)296. (證據決定)295. (例外規定)297의 2 審日刑訴292

第291條【同前】①訴訟關係人이 證據를 提出한 書類나 物件은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되는 送付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庭에서 別의 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②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庭에서 調査할 수 있다. (改正 1961.9.1)

刑訴法129. (證據調査)272. (證據提出)274. (例外規定)297의 2 審日刑訴305①-②-306-307  
③ 法官이 證據調査를 거치지 아니한 證據를 有罪의 資料로 삼은 것은 違法이다. (1974.3.12 73도 3342)

第292條【證據調査의方式】①裁判長은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에게 證據物을 提示하고 證據物이 書類인 때에는 그 要旨을 告知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證據된 書類를 書記로 하여금 朗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61.9.1)

刑訴法144. (證據裁判主義)307. (自由心證主義)308. (證據能力)311-315-318. (被告人意見)3293. (異議申請)296. (例外規定)297의 2 審日刑訴305-306-307  
④ 公判庭에서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한 證據를 證據로 採用한 違法이다. (1973.6.29 73도1187, 同 1966.11.22 66도1329)

第293條【證據調査結果와 被告人의 意見】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證據調査의 結果에 對한 意見을 듣고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 을 告知하여야 한다.

刑訴法132. (公判庭前申請)273-274. (異議申請)146외1. (鑑定人訊問)169외1. (通譯·翻譯)180외1. (審日刑訴)298  
⑤ 法院이 檢事에게 公訴狀變更를 命하거나 이나하 고 하여 違法이라 할 수 없고 審理의 證據力을 부여하기 위한 立證責任은 그 辯護를 命하 도 裁判長에게 있다. (1970.11.24 70도2109)

第294條의2【被告者의 陳述權】① 法院은 犯罪로 인한 被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告者를 證人으로 訊問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款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被告者가 아닌 證人이 申請한 경우  
2. 申請人이 이미 당해 事件에 關하여 公判庭次 또는 搜查庭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庭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犯罪로 인한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件에 關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人의 數가 多數인 場合에 는 證人으로 訊問한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出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刑訴法129. (證據調査)294. (證據決定)295. (例外規定)297의 2 審日刑訴292

第295條【證據申請에 對한 決定】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 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1987. 11. 28)

刑訴法135. (證據申請)294. (證據決定)291-309-310. (異議申請)296. (證據調査의 方式)292 審日刑訴298②

第296條【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刑訴法135-138. (異議申請)290-291-273-274-294. (決定)37②-④. (被告不許)403①

第297條【被告人等의 退廷】①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를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 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를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場合에 證人, 鑑定人 또는 共同 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書記로 하여금 陳述의 要旨을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刑訴法144. (證據裁判主義)307. (自由心證主義)308. (證據能力)311-315-318. (被告人意見)3293. (異議申請)296. (例外規定)297의 2 審日刑訴305-306-307  
③ 法官이 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한 證據를 證據로 採用한 違法이다. (1973.6.29 73도1187, 同 1966.11.22 66도1329)

第298條【公訴狀의 變更】①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은 適用法條의 追加·撤回 또는 變更를 할 수 있다. 이 場合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②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한 程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을 變更한 後 被告人이 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 야 한다.

刑訴法145. (檢事의 不出席)278. (公訴狀의 記載事項)254③. (證據決定)290-293. (審日刑訴)293  
④ 法院이 檢事의 申請을 通過하여 刑罰을 量定하였 다 하더라도 이를 違法이라고 할 수 는 없다. (19 65.3.30 65도3)

第303條【被告人의 最後陳述】裁判長은 檢事의 意見을 들은 後 被告人과 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 야 한다.

刑訴法145. (被告人의 最後陳述)298. (公訴狀의 記載事項)254③. (證據決定)290-293. (審日刑訴)293

第304條【裁判長의 處分에 對한 異議】①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裁判長의 處分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刑訴法136-138. (證據調査에 對한 異議)296. (裁判長處分)279-281-297-299. 法組54. (決定)37②-④. (被告不許)403①

第305條【辯論의 再開】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으로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 있다.

刑訴法137②-④. (被告不許)403①  
法院은 辯論을 再開하는 場合에 法院의 裁量에 依하여 辯論을 再開하는 時 辯論의 要旨을 復舊하게 하여야 하며 必要한 防禦의 準備을 하게 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으로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 는 없다. (1986.6.10 86도769)

第306條【公判庭次의 停止】①被告人이 事物의 辨別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할 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그 狀態가 繼續하는 期間 公判庭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②被告人이 疾病으로 因하여 出廷할 수 있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出廷할 수 있을 때까지 公判庭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庭次를 停止함에 是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④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免訴, 刑의 免除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것이 明白한 때에는 第1項, 第2項의 事由 있는 場合에도 被告人의 出廷없이 裁判할 수 있다.

刑訴法143. (心神障礙者)刑10①. (被告人不出席)276-277. (代理人의 出廷)277. (無罪)325. (召喚)326. (刑의 免除)322-刑7-21②-23②-26-27-90①-101①-113③-120-153-154-175-213-365②. (公訴棄却)327-328 審日刑訴314  
⑤ 第277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인이 出廷할 수 있는 場合에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刑訴法143. (心神障礙者)刑10①. (被告人不出席)276-277. (代理人의 出廷)277. (無罪)325. (召喚)326. (刑의 免除)322-刑7-21②-23②-26-27-90①-101①-113③-120-153-154-175-213-365②. (公訴棄却)327-328 審日刑訴314

第307條【證據裁判主義】事實의 認定은 證據에 依하여야 한다. (事實)254③④-323-325. (證據)310-318의 2 (法律上推定事實)刑263. (自由心證主義)308. (上告理由)383. 審日刑訴317  
刑訴法144. (決定의 取消)286외3. (公判庭次의 更新)301 審日刑訴315외2

第308條【自由心證主義】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依한다. (證據)310-318의 2. (本條違反)383-420③. (刑罰)383. 法組18. (合議部決議)法組59 審日刑訴318

第309條【強制自由의 證據能力】被告人의 自由의 拘束,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其他의 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

고 疑心할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하지 못한다. (改正 1963. 9. 1)

刑訴法145. (被告人의 陳述)286. (證據裁判主義)299. (證據再開)305. (例外)反國家7⑦-13① 審日刑訴293②

第309條의2【簡易公判庭次決定의取消과 公判庭次의更新】第286條의2의 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公判庭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檢事·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異議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73. 1. 25)

刑訴法144. (決定의 取消)286외3. (公判庭次의 更新)301 審日刑訴315외2

第310條【證據調査後의 檢事의 意見陳述】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가 終了한 때에는 檢事는 事實과 法律適用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場合에 是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依하여 檢事의 意見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 한다.

刑訴法145. (檢事의 不出席)278. (公訴狀의 記載事項)254③. (證據決定)290-293. (審日刑訴)293

第311條【自由의 證據能力】309 (適用除外)即決法10 審日刑訴319②  
刑訴法130. (自由의 證據能力)309 (適用除外)即決法10 審日刑訴319②  
刑訴法130. (自由의 證據能力)309 (適用除外)即決法10 審日刑訴319②

第312條【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陳述】①檢事가 被疑者나 被疑者아닌 者의 陳述를 記載한 調査를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査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原陳述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認定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이 被疑者의 陳述를 記載한 調査는 그 陳述이 特別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그 被疑者였던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

②檢事 以外的의 搜查機關 作成의 被疑者訊問 調査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 該 被疑者였던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該 內容을 認定할 때에 限하여 證據로 할 수 있다. (改正 1961.9.1)

刑訴法130. (自由의 證據能力)309 (適用除外)即決法10 審日刑訴319②

第313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4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5條【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다음에 揭記한 書類는 證據로 할 수 있다.

1. 戶籍의 謄本 또는 抄本, 公正證書謄本 其他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의 職務上 證明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 作成한 文書

2. 商業帳簿, 航海日誌 其他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3. 其他 特別히 信用할만한 情況에 依하여 作成된 文書  
刑訴法130. (傳聞의 陳述)165 審日刑訴321  
法院이 證人으로 陳述한 證據물이나 證人이 出 庭하여 3회에 限り 拘留令狀을 發行하지 아니한 출 廷하여 所在不明이라는 理由로 執行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場合는 刑訴法 第314條의 公判庭次에 陳述를 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刑訴法130. (傳聞의 陳述)165 審日刑訴321  
法院이 證人으로 陳述한 證據물이나 證人이 出 庭하여 3회에 限り 拘留令狀을 發行하지 아니한 出 庭하여 所在不明이라는 理由로 執行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場合는 刑訴法 第314條의 公判庭次에 陳述를 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刑訴法130. (傳聞의 陳述)165 審日刑訴321  
法院이 證人으로 陳述한 證據물이나 證人이 出 庭하여 3회에 限り 拘留令狀을 發行하지 아니한 出 庭하여 所在不明이라는 理由로 執行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場合는 刑訴法 第314條의 公判庭次에 陳述를 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6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7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8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9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0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1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2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3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4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5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6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7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8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9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30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31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刑訴法130. (傳聞의 陳述)165 審日刑訴321  
法院이 證人으로 陳述한 證據물이나 證人이 出 庭하여 3회에 限り 拘留令狀을 發行하지 아니한 出 庭하여 所在不明이라는 理由로 執行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場合는 刑訴法 第314條의 公判庭次에 陳述를 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6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7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8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19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0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1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2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3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4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5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6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7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8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第329條【傳聞의 陳述】①被告人와 其他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庭次에서의 陳述가 死亡, 疾病 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該 陳述를 採用할 수 는 없다. (1986.2.25 85도 2788)



條에規定한者は被告人的 同意를 얻어  
上訴를取下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民911-938-928. (拋棄, 取下의 效力)354. (上訴取下의 費用負擔)190. (拋棄, 取下의 效力)352-355. 日刑刑360

**第352條 【上訴拋棄等の方式】** ①上訴의 拋棄 또는 取下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 할 수 있다. ②口述로 상訴의 拋棄 또는 取下를 한 境遇에서는 그事由를 調書에記載하여야 한다.

○(上訴의 拋棄, 取下)349-351. 日刑刑361

**第353條 【上訴拋棄等の管轄】** 上訴의 拋棄는 原審法院에, 上訴의 取下는 上訴法院에 하여야 한다. 但 訴訟記錄이 上訴法院에 送付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의 取下를 原審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上訴의 拋棄, 取下)349-351-352. 日刑刑361

**第354條 【上訴拋棄後の 再上訴의 禁止】** 上訴를 取下한者 또는 上訴의 拋棄나 取下에 同意한者는 그事件에 對하여 다시 上訴를 하지 못한다.

○(上訴取下-拋棄, 同意한 者)350-351. 日刑刑361

○(上訴의 拋棄後에 한 再上訴起는 不合法하므로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할 것이다.)19 61.12.21 4294刑上583. 同前1970.2.4 70565)

**第355條 【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權回復의 請求 또는 上訴의 拋棄나 取下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1963.12.13)

○(在所者에 對한 特則)344. (上訴權回復의 請求)345-348. (上訴의 拋棄, 取下)349-352. 日刑刑361

**第356條 【上訴拋棄等과 相對方에의 通知】** 上訴, 上訴의 拋棄나 取下 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相對方에게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上訴)338-344. (上訴의 拋棄, 取下)349-352. (上訴權回復의 請求)345-348. 日刑刑361

○(法院이 上訴의 相對方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上訴理由로 삼을 수 없다.)1961.10.12 4294刑上288)

### 第2章 抗 訴

**第357條 【抗訴할 수 있는 判決】** 第1審 法院의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地方法院 單獨判事가 宣告한 것은 地方法院 本合議部에 抗訴할 수 있으며 地方法院 合議部가 宣告한 것은 高等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改正 1961.9.1, 1963.12.13)

○(抗訴權)338-340-341. (第1審判決)319-321-322-325-327. (單獨判事)法組73. (抗訴權)法組25-29. (廢止上訴)372-373. (高等法院)行訴41. 日刑刑372

○(現行 刑事訴訟法에 抗訴는 基本的으로 實體的 的인 對한 것에서 實體的 的인 對한 것에서 對한 것으로 되고, 다만 事後의 要件을 도입한 刑事訴訟法의 條文들이 上訴의 權限을 확대하고 抗訴의 權限을 減少시킨다는 點에 對하여 必要에서 抗訴의 權限의 性質에 制限을 가하고 있음에 不適當하다.)1983.4.26 82도2829. 82강도 612)

**第358條 【抗訴提起期間】** 抗訴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改正 1963.12.13)

○(期間의 計算)66-67-344①-345. (起算點)343②. (抗訴의 提出에 關한 決定)105. (抗訴判決의 效力)法組21. (廢止上訴)法組31①. 日刑刑373

**第359條 【抗訴提起의 方式】** 抗訴를 한에 是 抗訴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原審法院)法組29. (抗訴할 수 있는 判決)357. (在所者에 對한 特則)344. (訴訟記錄을 送付)361. (對象에 對한 決定)105. 日刑刑374

○(抗訴狀(抗訴申立書)에 抗訴法院을 第1審法院으로 記載한 場合에 이를 抗訴法院의 訴訟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957.2.15 4289刑上323)

**第360條 【原審法院의 抗訴棄却決定】** ①抗訴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訴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方式違反)359. (抗訴權의 消滅)354-358. (決定)37-39. (即時抗告)405-406-410. 日刑刑375

**第361條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 ①前條의 境遇外에는 原審法院은 抗訴狀을 받은 날로부터 14日以内에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付하고 그檢事는 그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内에 抗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抗訴法院에 對應한 證據物을 받은 날로부터 5日以内에 抗訴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③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境遇에는 原審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訴訟記錄을 送付한 날로부터 20日以内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 地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原審法院)法組29. (抗訴法院)357. 法組25-29. ①. (抗訴棄却決定)360-361. (期間)計4. 66. 日刑刑235-234

○(檢事의 裁判不當인抗訴理由에 對하여 明示의 인表現이 없다고 하더라도, 原審이 第1審判決을 廢棄한後인 경우 第1審이 宣告한 刑보다 重한 刑에 處한다. 거기에 對하여는 檢事의 裁量不當의 主張이 理由인 對한 裁判이 相當하여 있다고 볼 것이다.)1983.9.13 83도1709)

**第361條의 2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抗訴法院이 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即時 抗訴人과 相對方에게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②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게도 前項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新設 1961.9.1)

○(辯護人의 選任)30-32①-33-90. 日刑刑362

○(抗訴한 檢事에게 訴訟記錄接受通知를 하지 않고 原審에 對應하는 高等檢察廳檢事에게 그 權限을 通知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檢事一體의 原則에 따라 그 通知는 合法하다.)1966.12.27 66도1488)

**第361條의 3 【抗訴理由書와 答辯書】** ①抗訴人 또는 辯護人은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内에 抗訴理由書를 抗訴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抗訴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副本 또는 謄本을 抗訴人 또는 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新設 1961.9.1, 改正 1963.12.13)

○(抗訴法院)357. 法組25-29②. 日刑刑376. 日刑刑372-213

○(辯護人의 選任이 抗訴理由를 提出前에 辯護人本人이 나 抗訴理由에 對한 審理안으로 抗訴를 棄却한는 合法하다.)1964.5.19 64도71)

○(抗訴理由書)361의3. (抗訴棄却決定)360-362. (抗訴狀)359. (抗訴理由)361의5. 日刑刑386

**第362條 【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抗訴한 共同被告人에게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게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新設 1961.9.1, 改正 1963.12.13)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 法律, 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2. 判決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5. 削除 (1963.12.13)

6. 削除 (1963.12.13)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한 判事가 그 事件의 審理에 關與한 때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10. 削除 (1963.12.13)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12.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13.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친 때

14. 刑의 量定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事由가 있는 때 (新設 1961.9.1)

○(憲法의 違反)107. ②. (刑의 廢止)326. (刑의 變更)刑1②. (赦免)赦5. ③. (管轄)11. (管轄違反)319-320. ④. (判決法院構成)法組7. (公判)法組27-109. 法組53. ⑤. (判決理由)323-336. ⑥. (再審事由)420. ⑦. (判決理由)323-383. 日刑刑380-383-378-377-382-381

○(廢止申請事件에 關한 判事가 民事本案事件에 關한 判事로 廢止될 수 있다.)1970.4.15 70도5)

**第362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1961.9.1)

○(原審法院)法組29. (抗訴法院)法組25-29. (決定)37②-④. (即時抗告)405-406-410. 日刑刑385

**第363條 【公訴棄却의 決定】** ①第328條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新設 1961.9.1)

○(原審法院)法組29. (抗訴法院)法組25-29. (決定)37②-④. (即時抗告)405-406-410. 日刑刑385

**第364條 【抗訴法院의 審理】** ①抗訴法院은 抗訴理由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②抗訴法院은 判決에 影響을 미친 事由에 關하여는 抗訴理由書에 包含되지 아니한 境遇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 있다. (改正 1963.12.13)

○(特別規定)365②. 日刑刑404

○(現行 刑事訴訟法의 條文은 抗訴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抗訴에서도 公訴의 變更를 할 수 있다.)19 86.7.8 86도621)

**第365條 【被告人의 出廷】** ①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公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②被告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다시 定한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을 할 수 있다.

○(被告人出廷)376. ②. (被告人陳述없이 하는 判決)330. 日刑刑390

○(被告人이 未成年者이고 心神喪失의 疑心있는 者인 場合에 是는 不合法하고 辯護人의 出廷없이 廢止 審理한 것은 違法的이다.)1964.6.16 64도15 1)

**第366條 【原審法院에의 送還】**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送還하여야 한다.

○(判決로 破棄한 事件을 原審法院에 送還하여야 한다.)1977.5.22 77도158. (公訴棄却)327. (管轄違反의 裁判)319. (原審判決의 破棄)364⑤. 日刑刑398

**第367條 【管轄法院에의 移送】** 管轄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但 抗訴法院이 그事件의 第1審管轄權이 있는 때에는 第1審으로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1963.12.13)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76條 【原審法院에서의 上訴棄却決定】** ①上訴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上訴權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方式違反)372. (上訴提起의 方式)375. (上訴權消滅)354-374-355. (決定)37-39. ②. (即時抗告)405-406-410. 日刑刑375

**第377條 【檢察廳의 記錄送付期間】** ①前條의 境遇外에는 原審法院은 上訴狀을 받은 날로부터 14日以内에 訴訟記錄을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付하고 그檢事는 그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内에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78條 【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上訴法院이 訴訟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即時 上訴人과 相對方에 對하여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79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0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第379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0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1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2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3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第379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0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1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2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3條 【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法院은 決定으로 上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原審法院)371-372. 法組29. (抗訴法院에의 方式)359. 日刑刑361

○(上訴를 한에 是 上訴狀에 對하여 裁量하여야 하며 刑事訴訟法 第375條에 規定하는 바대로 公判廷에서 口述로 하는 是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1960.8.5 4291刑上1)



第385條 前條(1961.9.1)  
第386條 【辯護士の資格】 上告審에 는 辯護士가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서 選任하지 못한다.  
第387條 【辯論能力】 上告審에 는 辯護人이 아니라 被告人을 爲하여 辯論하지 못한다.  
第388條 【辯論方式】 檢察官과 辯護人은 上告理由書에 依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第389條 【辯護인의 不出席等】 ①辯護人의 選任이 없거나 辯護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察官의 陳述를 듣고 判決을 할수 있다. 但 第283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適法한 理由書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該陳述이 있는것으로 看做한다.  
第390條 【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수 있다. (改正 1961.9.1)  
第391條 【原審判決의 破棄】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第392條 【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의 利益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上告한 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該共同被告人에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第393條 【公訴棄却과 選送의 判決】 適法한 公訴를 棄却하였다는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選送하여야 한다.  
第394條 【管轄認定과 移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있는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395條 【管轄違反과 選送의 判決】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法院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選送하여야 한다.  
第396條 【破棄自判】 ①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境遇에 該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法院이 調査한 證據에 依하여 判決하기 充分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該被告人에 對하여 直接判決을 할수 있다. (改正 1963.12.13)  
②第368條의 規定은 前項의 判決에 準用한다.  
第397條 【選送 또는 移送】 前4條의 境遇外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選送하거나 그와 同等한 다른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398條 【裁判書의 記載方式】 裁判書에는 上告의 理由에 關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1961.9.1)  
第399條 【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準用한다.  
第400條 【判決訂正의 申請】 ①上告法院은 判決의 內容에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察官, 上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로써 訂正할 수 있다. (改正 1961.9.1)  
②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는 날로부터 10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申請은 申請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第401條 【訂正의 判決】 ①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수 있다.  
②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選帶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第4章 抗告

第402條 【抗告할수있는 裁判】 法院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수 있다. 但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403條 【判決前의 決定에 對한 抗告】 ①法院의 管轄 또는 判決前의 訴訟節次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特別 抗告를 할수있는 境遇外에는 抗告를 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決定 또는 鑑定하기 爲한 被告人의 留置에 關한 決定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04條 【普通抗告의 時期】 抗告는 即時抗告外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但 原審決定을 取消하여도 實益이 없게 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1963.12.13)  
第405條 【即時抗告의 提起期間】 即時抗告의 提起期間은 3日로 한다.  
第406條 【抗告의 節次】 抗告를 할 때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407條 【原審法院의 抗告棄却決定】 ①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수 있다.  
第408條 【原審法院의 更新決定】 ①原審法院은 抗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抗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第409條 【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即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 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10條 【即時抗告와 執行停止의 效力】 即時抗告의 提起期間內에 그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된다.  
第411條 【訴訟記錄等의 送付】 ①原審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告法院에 送付하여 야 한다.  
②抗告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抗告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5日 以內에 當事者에게 該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412條 【檢事의 意見陳述】 檢事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意見を 陳述할수 있다.

23-97④, 101④, 151-177, 183-161, 192-193, 328-335④, 337④, 347-363, 437-433, 434④, 435④, 436④, 455④, 491-487, 489, (解釋에 關한 決定) 96-97, 102-103, 109(拘禁) 69-72, (解釋) 94-100, 102-105, (釋收) 106-108, (押收物還付) 113, (鑑定留置) 172 日 刑訴420  
國 公訴事實은 適用法律의 通知, 檢問 또는 變更의 許可에 關한 決定은 判決前 訴訟節次에 關한 決定이라 할 것이므로, 該決定을 할 때에 이 지어지는 法官이 判決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하여 該 判決에 對하여 上訴를 하여 다음으로 不服하는 外에는 當事者가 이에 對하여 獨立하여 上訴할 수 없다 是 然하다. (1987.3.28 87도 17)  
第404條 【普通抗告의 時期】 抗告는 即時抗告外에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但 原審決定을 取消하여도 實益이 없게 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1963.12.13)  
國 (即時抗告) 405-410 日 刑訴421  
第405條 【即時抗告의 提起期間】 即時抗告의 提起期間은 3日로 한다.  
國 (期間의 計算) 66, (起算點) 343② 日 刑訴422  
國 辯護人에 對한 決定告知日과 被告人 本人에 對한 決定告知日이 各 상이한 경우에는 訴訟主體인 被告人 本人에 對한 決定告知日을 기준하여 上訴(即時抗告) 提起期間을 起算함이 妥當하다. (1960.12.20 4293刑訴52)  
第406條 【抗告의 節次】 抗告를 할 때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國 (原審法院) 法組 17-25, (原審法院決定) 407-408 日 刑訴423  
第407條 【原審法院의 抗告棄却決定】 ①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것이 明白한 때에는 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即時抗告를 할수 있다.  
國 (原審法院) 法組 17-25, (抗告의 節次) 406, (抗告權의 消滅) 404-405, 354, (抗告法院의 抗告棄却決定) 413-414, (即時抗告) 405-406, 410 日 刑訴423  
第408條 【原審法院의 更新決定】 ①原審法院은 抗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②抗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國 (原審法院) 法組 17-25, (決定) 37②-④, (期間計算) 166, (抗告法院) 法組 17-25 日 刑訴423②  
第409條 【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即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 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國 (原審法院·抗告法院) 法組 17-25, (決定) 37②-④, (即時抗告效力) 410 日 刑訴424  
第410條 【即時抗告와 執行停止의 效力】 即時抗告의 提起期間內에 那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된다.  
國 (拘禁) 206-209, (押收) 215-219, (押收物還付) 219-133-134-136-332 日 刑訴430  
國 刑事訴訟法 第332條에 依하여 押收를 解除된 것으로 되 있음에 도 檢事가 押收物의 引渡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抗告할 수 있다. (1974.5.30 74도 28)  
第411條 【準抗告의 方式】 前2條의 請求는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國 (準抗告) 416-417, (管轄法院) 417 日 刑訴431  
第412條 【檢事의 意見陳述】 檢事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意見を 陳述할수 있다.

第413條 【抗告棄却의 決定】 第407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國 刑訴165, (抗告棄却의 決定) 407 日 刑訴426  
第414條 【抗告棄却과 抗告理由認定】 ①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抗告를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 裁判을 하여야 한다.  
國 刑訴165, (抗告棄却의 決定) 407-413, (決定) 37-39 日 刑訴426  
第415條 【再抗告】 抗告法院 또는 高等法院의 決定에 對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憲法, 法律, 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에 即時抗告를 할수 있다. (改正 1961.9.1, 1963.12.13)  
國 (大法院法令審査權) 107, 法組 18, (即時抗告) 405-406-410 日 刑訴427, 428  
國 大法院이 抗告에 對하여는 理由에 依한 申述가 不服抗告할 수 있다. (1987.1.30 87도 4)  
第416條 【準抗告】 ①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한 裁判을 告知한 境遇에 不服이 있으면 該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를 請求할 수 있다.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關한 裁判  
3. 鑑定하기 爲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4. 證人, 鑑定人, 通譯인 또는 翻譯人에 對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 賠償을 命한 裁判  
②法院이 前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 是 合議部에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있는 날로부터 3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④第1項第4號의 裁判은 前項 請求期間內에 請求가 있는 때에는 該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國 (請求事項) 418, (1) (忌避申請棄却) 20①-23, (2) (拘禁) 70-80, (保釋) 95-96, (押收) 106-108-136, (押收物還付) 133-134-136, (3) (鑑定留置) 172③, (4) (地方法院合議部) 法組 7④-29, (期間計算) 66, (執行停止) 410 日 刑訴429  
第417條 【同前】 檢察官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處分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該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한 抗告에 該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를 請求할 수 있다.  
國 (拘禁) 206-209, (押收) 215-219, (押收物還付) 219-133-134-136-332 日 刑訴430  
國 刑事訴訟法 第332條에 依하여 押收를 解除된 것으로 되 있음에 도 檢事가 押收物의 引渡를 拒否하는 경우에는 抗告할 수 있다. (1974.5.30 74도 28)  
第418條 【準抗告의 方式】 前2條의 請求는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國 (準抗告) 416-417, (管轄法院) 417 日 刑訴431  
第419條 【準用規定】 第409條, 第413條, 第414條, 第415條 本文의 規定은 第416條, 第417條의 請求 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國 (準用抗告와 執行停止) 409, (再抗告의 制度) 415 (準抗告) 416-417 日 刑訴432

第420條 【再審理由】 再審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該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偽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된 때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翻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偽인 것이 證明된 때  
3. 證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該證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變更된 때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한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事件에 關하여 有罪判決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該判決의 基礎된 調査에 關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該公訴의 基礎된 搜查에 關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該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前에 法官,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該事由를 알지 못함에 限한 다.  
國 (再審請求權) 424, 425, (反行行爲, (有罪의 宣告) 321-322, (確定判決) 343-349-358-374, (偽造·變造) 刑155-421, (偽證) 刑152-154, (證言) 刑156, (有罪) 321, (無罪) 325, (免訴) 326, (刑의 免除) 322, (著作權侵害罪) 刑59 이하, 特許權 51 이하, (商標) 刑30 이하, 意匠 67 이하, 商標 60 이하, (確定判決) 422, (職務에 關한 罪) 122 이하, (再審에 對한 時期) 反行行爲 刑12 日 刑訴435  
國 第420條 第5號의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然한 處, 確定判決(格式書)의 訴訟節次에 發見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發見되었으나 하여도 이를 提出하는 期間이 不可能한 處, 證據를 提出할 權이 있으면 證據의 真实性이 疑의 餘地가 없음을 證明한 후에 提出할 수 있다. (1987.2.11 86도 22)  
第421條 【同前】 ①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該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63.12.13)  
②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는 後에는 抗訴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③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는 後에는 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國 (再審請求權) 424, (抗訴棄却) 364②, (上告棄却) 390 日 刑訴436  
國 本案 被告事件의 犯罪事實에 關하여 證據에 依하여 事實認定을 하지 않았던 原上告審判決에 對하여 原判決 被告人이 檢事 또는 現在 公判 進行中이라는 事由를 내세워 再審請求를 할수 없다. (1986.5.14 86도 1)  
第422條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判決로써 犯

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理由로 할 境遇에 該確定判決을 援引할 수 없는 때에는 該事實을 證明하여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確定判決을 援引할 수 없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 (證據가 없다는 理由) 325, (再審理由) 420-421 日 刑訴437  
第423條 【再審의 管轄】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國 (再審理由) 420-421 日 刑訴438  
國 刑事訴訟法 第423條에 依하여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原判決이라고 하는 것은 再審請求人이 再審事由가 있다고 하여 再審請求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該判決을 가리킨다. (1986.6.12 86도 17)  
第424條 【再審請求權者】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檢事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  
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  
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礙가 있는 境遇에는 該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姊妹  
國 (檢事) 檢5, (法定代理人) 民909-911-928-938, (心神障礙) 刑10, (直系親族·兄弟姊妹) 民767-769, (配偶者) 812, (親屬) 反行行爲 刑12 日 刑訴439①  
國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請求를 하기 爲하여 辯護士를 選任한 경우에는 該 辯護士가 再審請求를 할 수 있다고 함이 妥當하다. (1956.4.27 4288刑訴10)  
第425條 【檢事만이 請求할수있는 再審】 第420條 第7號의 事由에 依한 再審의 請求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을 犯하게 된 境遇에는 檢事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國 (再審請求權者) 424 日 刑訴439②  
第426條 【辯護人의 選任】 ①檢事以外의 者가 再審의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辯護人의 選任은 再審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該效力이 있다.  
國 (檢事以外의 再審請求權者) 424, (辯護人選任) 31-32 日 刑訴440  
第427條 【再審請求의 時期】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國 (刑의 執行을 받지 않게 된 時) 刑77, 檢5, (補償) 刑補1② 日 刑訴441  
第428條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官 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國 (管轄法院) 423, (法院에 對應) 檢2,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 432-436, (刑의 執行停止) 469-471 日 刑訴442  
第429條 【再審請求의 取下】 ①再審의 請求는 取下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國 (訴訟費用負擔) 190-193 日 刑訴443  
第430條 【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再審의 請求와 該取下에 準用한다.  
國 (再審請求理由) 420-421-424 日 刑訴444  
第431條 【事實調査】 ①再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合議部員에게 再審請求의 理由에 對한 事實調査를 命하거나 다른 法院判事에게 이를 囑託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 있다.  
國 (合議部) 法組 7①②④-17-24-27, (再審請求理由) 420-421, (事實調査) 37③④ 日 刑訴445



第478條【相續財產에 對한 執行】沒收 또는 租稅, 專賣 其他 公課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裁判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 裁判을 받은 者가 裁判 確定後 死亡한 境遇에 는 그 相續財產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附則(死亡)民997, (相續財產)民1005-1007, (補償決定)民28, 日刑訴491

第479條【合併後 法人에 對한 執行】法人에 對하여 罰金, 科料, 沒收, 追徵, 訴訟費用 또는 費用賠償을 命한 境遇에 法人이 그 裁判 確定後 合併에 依하여 消滅한 때에는 合併後 存續한 法人 또는 合併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合併(商)174-176, 599-602, (補償決定)民28, 日刑訴492

第480條【假納執行의 調整】第1審 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에 第2審 假納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第1審 假納의 執行은 第2審 假納金額의 限度에서 第2審 假納의 執行으로 看做한다.

〔假納(刑決)334, 370-477, 日刑訴493

第481條【假納執行과 本刑의 執行】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裁判이 確定한 때에는 그 金額의 限度에서 刑의 執行이 된 것으로 看做한다.

〔假納(刑決)334, 370-477, 日刑訴494

第482條【上訴提起後 判決前 拘禁日數의 算入】①上訴提起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 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通算은 判決宣告前 拘禁의 1日을 刑期의 1日 또는 金額의 1,000원으로 算定한다.

③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中の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判決宣告前拘禁〕刑57, 刑補1①, [通算에 關한 不服]489, [判決前拘禁日數의 通算]刑57, [上訴提起期間]343-358-374, [檢事의 上訴]338, [檢事以外의 上訴]338-340-341, [破棄]364-366-367-391-397, 日刑訴495

第483條【沒收物의 處分】沒收物은 檢事가 公賣에 依하여 處分하여야 한다.

〔沒收(刑決)刑48, 刑訴321-322-477-489, [沒收物交付]484, 日刑訴496

第484條【沒收物의 交付】①沒收를 執行한 後 3月以內에 그 沒收物에 對하여 正當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 交付를 請求한 때에는 檢事は 破棄 또는 廢棄할 것이 아니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沒收物을 處分한 後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는 檢事は 公賣에 依하여 取得한 代價를 交付하여야 한다.

〔沒收(刑決)477, [正當한 權利者]刑48①, [沒收物의 處分]483, 日刑訴497

〔起訴中處分이 되어 있는 水産業法違反 被疑 案件의 破棄는 그 共犯者에 對한 確定된 刑의 命令에 共犯으로 認定되어 있다면 該被疑 案件에 關하여 押收된 物의 所有權이 自己에게 있다는 理由안으로는 그 押收物의 引渡를 請求할 수 없다. (1970. 7. 24 70나536)

第485條【偽造等의 表示】①偽造 또는 變造한 物을 還付하는 境遇에 는 그 物의 全部 또는 一部에 偽造나 變造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偽造 또는 變造한 物이 押收되지 아니한 境遇에 는 그 物을 提出하게 하여 前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但 그 物이 公務所에 屬한 것인 때에는 偽造나 變造의 事由를 公務所에 通知하여 適當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押收(刑決)106-108, (還付)133-134, (刑決)刑155①, 225-229, 231, 日刑訴498

第486條【還付不能과 公告】①押收物의 還付를 받은 者의 所在가 不明하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還付를 할 수 없는 境遇에 는 檢事は 그 事由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②公告한 後 3月以內에 還付의 請求가 없이는 때에는 그 物은 國庫에 歸屬한다. ③前項의 期間에 亦 價值있는 物은 廢棄할 수 있고 保管하기 困難한 物은 公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押收(刑決)133-134-332-333, [期間의 計算]66, (雜業·公賣)130-132, 日刑訴499

第487條【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을 받은 者가 貧困으로 因하여 이를 完納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裁判의 確定後 10日以內에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執行免除을 申請할 수 있다.

〔刑訴(刑決)174, (訴訟費用負擔)186-194, (期間計算)66, (執行停止)472, (在所在에 對한 特別)490, ②, 344, (申請取下)490①, (即時抗告)491, 日刑訴500

第488條【疑義申請】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在所在에 對한 特別]490②, 344, [刑의 宣告]321-364-370-396-399-448, [申請의 取下]490, (即時抗告)491, 日刑訴501

第489條【異議申請】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關한 檢事의 處分이 不當함을 理由로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刑訴(刑決)174, (法定代理人)刑909-911-928-938, (申請取下)490, (即時抗告)491, 日刑訴502

第490條【申請의 取下】①前3條의 申請은 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②第344條의 規定은 前3條의 申請과 그 取下에 準用한다.

〔法院의 決定]491①, [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487, [疑義申請]488, [異議申請]489, 日刑訴503

第491條【即時抗告】①第487條 乃至 第489條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는 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即時抗告]405-406-410, 日刑訴504

경우 이는 法人의 성립상 執行不能에 根據이 될 得지 않는다. (1963. 7. 11 63오3)

第493條【執行費用의 負擔】第477條 第1項의 裁判執行費用은 執行을 받은 者의 負擔으로 하고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準하여 執行과 同時에 徵收하여야 한다.

〔民事訴訟法의 規定]民訴513, 日刑訴506

附 則

第1條 本法施行前에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 는 舊法을 適用한다.

〔公訴提起]254

第2條 本法施行前에 執行되는 刑事訴訟法附則 第2項 但書에 依한 法施行以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 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미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을 維持함에 關係되는 限에서 新法을 適用할 수 없는 것이다. (1973. 7. 11 73오35)

第3條 本法施行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節次로 本法의 規定에 相當한 것은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條 本法施行前 進行된 法定期間과 訴訟行爲을 할 者의 住居나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所在地의 距離에 依한 附加期間은 舊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本法第45條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關係人이 裁判書나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境遇에 는 用紙 1枚 50圓으로 計算한 收入 印紙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6條 本法施行當時 法院에 係屬된 事件의 處理에 關한 必要事項은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大法院規則의 定한 바에 依한다.

〔附則]刑訴82

第7條 當分間 本法에 規定한 過怠料과 附則 第5條의 用紙料金額은 經濟事情의 變動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增減할 수 있다.

第8條 本法施行 直前까지 施行된 다음 法令은 廢止한다.

1. 朝鮮刑事令中 本法에 抵觸되는 法條
2. 美軍政令中 本法에 抵觸되는 法條

第9條【施行日】이 法律은 廢紀4287年(西紀 1954年) 5月 30日 부터 施行한다.

〔刑訴(刑決)附則 第9條에 依한 同法 施行 期日은 1954. 5. 30로 規定되었으나 同法이 1954. 9. 23에 公布되었으므로 舊 規定은 法律公布 後부터 因하여 失效力이고 舊 施行期日은 本法 規定에 依하여 公布後 20日 後 經過한 日이라고 看做한다. (1955. 6. 21 4288刑上95)

附 則 (1961. 9. 1)

【經過規定】①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適用한다. 但 本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本法施行前에 上訴한 事件은 從前의 例에 依하여 處理한다.

【施行日】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3. 12. 13)

①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 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本法 施行 당시 法院에 係屬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本法 施行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行刑法

(1950年 3月 2日)

〔法律 第105號)

改正 1961. 12. 23法 858號 1962. 12. 24法 1222號

1973. 1. 15法 2437號 1980. 12. 22法 3289號

第1章 總 則……(第1條~第7條)

第2章 收容……(第8條~第13條)

第3章 戒 護……(第14條~第17條)

第4章 接見과 書信……(第18條~第19條)

第5章 給 與……(第20條~第22條)

第6章 衛生과 醫療……(第23條~第30條)

第7章 教育和 敎諭……(第31條~第34條)

第8章 作 業……(第35條~第40條)

第9章 領 置……(第41條~第43條)

第10章 分類과 處遇……(第44條~第48條)

第11章 假釋放……(第49條~第52條)

第12章 釋 放……(第53條~第56條)

第13章 死刑의 執行 및 死亡……(第57條~第61條)

第14章 未決收容……(第62條~第69條)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本法은 懲役刑, 禁錮刑 및 勞務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者(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隔離하여 矯正教化하며 健全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涵養하고 技術教育을 實施하여 社會에 復歸하게 하여 아울러 刑事被告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者(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의 收容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矯正所等의 設置】①廢止(1973. 1. 15)

②矯正所에는 滿 20歲 以上의 受刑者를 收容한다.

③少年矯正所에는 滿 20歲 未滿의 受刑者를 收容한다.

④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爲하여 矯正所, 少年矯正所內에 未決收容室을 둔다.

⑤未決收容者의 收容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게 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務部長官 所屬下에 拘留所를 둘 수 있다.

⑥矯正所, 少年矯正所, 拘留所의 名稱, 位置 및 職制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80. 12. 22)

第3條【區分收容의 例外】①矯正所 또는 少年矯正所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이 特別한 事情이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6月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期間에 限하여 第2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는 成年과 少年을 分離 收容한다.

第4條【異性受刑者의 隔離】男子와 女子는 隔離收容한다.

第5條【矯正所等의 巡閱等】①法務部長官은 矯正所, 少年矯正所 및 拘留所를 巡閱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서 하여금 巡閱하게 할 수 있다.

②判事와 檢事は 矯正所, 少年矯正所 또는 拘留所를 隨時로 視察할 수 있다.

③第2項 以外의 者로서 學術研究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正所, 少年矯正所를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該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④男子 또는 女子가 異性을 收容한 矯正所, 少年矯正所를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當該所長이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許可한다.

第6條【請 願】受刑者는 그 處遇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巡閱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

第7條【執務規程】矯正官의 執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第2章 收容

第8條【新入者의 收容等】①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로서 矯正所, 少年矯正所 또는 拘留所에 新入하는 者(以下 “新入者”라 한다)에 對하여 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其他 適法한 書類를 調査한 後 收容한다.

②新入의 女子가 所生乳兒의 帶同을 申請한 때에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 는 限하여 生後 18月에 이르기까지 當該所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受刑中에 出生한 乳兒에 對하여도 第2項에 準한다.

第9條【傳染病罹患者의 隔離】他人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傳染病罹患者는 收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0條【身體檢査等】①新入者에 對하여 는 身體,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撮影하여야 한다.

②受刑中의 者에 對하여도 當該所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境遇에 는 身體, 衣類를 檢査하고 指紋을 採取하며 寫眞을 撮影할 수 있다.

第11條【獨居收容】①受刑者는 獨居收容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 는 混居收容할 수 있다.

②混居收容의 境遇에 는 受刑者의 刑期, 罪質, 性格, 犯數, 年齡, 經歷等を 參照하여 居室을 區別收容한다.

③作業場의 就業에 있어서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受刑者의 移送】受刑者의 收容, 作業, 教化 其他 處遇上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所長은 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受刑者를 다른 矯正所 또는 少年矯正所에 移送할 수 있다.

第13條【死刑囚의 收容】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拘留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

第3章 戒 護

第14條【戒 具】①受刑者의 逃走, 暴行, 騷擾 또는 自殺의 防止 其他 必要한 境遇에 는 戒具를 使用할 수 있다.

②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捕 籠
2. 手 匣
3. 連 鎖
4. 防禦具

第15條【武器의 使用】①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矯正官은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改正 1980. 12. 22)

- 1. 矯正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危險하고 認定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使用할 危險物을 所持하고 그 計劃을 繼續하는 때
3. 逃走할 目的으로 多衆이 騷擾하는 때
4. 逃走를 企圖하는 者가 制止에 不應하거나 그 計劃을 繼續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以外에 人命, 身體, 建物 其他 施設과 器械에 對한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때

②矯正官은 矯正所內(矯正所에서 의 作業 또는 護送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찾기 또는 他人의 生命, 身體에 대한 危險防止를 위하여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他人의 生命, 身體에 대한 危險防止를 위하여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他處에 移送할 수 있다.

③他處에 의 移送가 不願한 때에는 一時釋放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刑法第145條에 依하여 處斷한다.

第16條【收容者의 緊急移送等】①所長 또는 拘留所의 長은 天災, 地震 其他 事變으로 因하여 矯正所, 少年矯正所 또는 拘留所內에서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他處에 移送할 수 있다. (新設 1980. 12. 22)

②受刑中에 出生한 乳兒에 對하여도 第2項에 準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後 24時間內에 矯正所, 少年矯正所, 拘留所 또는 最近地警察署에 出席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刑法第145條에 依하여 處斷한다.

第17條【逃走受刑者의 逮捕】受刑者가 逃走한 때에는 72時間 以內에 限하여 矯正官은 이를 逮捕할 수 있다.

第4章 接見과 書信

第18條【接見과 書信의 受授】①受刑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他人과 接見하거나 書信을 受授할 수 있다.

②親族 以外의 者와의 接見과 書信受授는 必要한 用務가 있을 때에 限한다.

③受刑者의 接見과 書信受授은 矯正官의 參與 또는 檢閱를 要한다.

④接見, 參與, 書信의 檢閱 및 接見과 書信의 制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80. 12. 22)

第19條【書信等의 領置】受刑者에 交付된 書信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後 이를 領置한다.

第5章 給 與

第20條【給 與】①受刑者에게는 一定한 衣類와 寢具를 給與한다.

②衣類와 寢具의 給與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1980. 12. 22)

第21條【同 前】①受刑者에게는



교도관리는 이를 개피하지 못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第5條 【巡廻官의 請願】 ①수형자는 순열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청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청원이 있는 때에는 순열관은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순열관에게 청원할 것을 예고하는 수형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6條 【巡廻官의 口述請願의 聽取】 순열관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리를 참여시키지 못한다.

第7條 【巡廻官의 職務】 ①순열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순열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第8條 【請願書의 處理】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第9條 【所長의 面會】 ①소장은 매주 1회 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형자의 처우 또는 일상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을 하여야 하며 면접인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접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章 收容

第10條 【新入者의 引受】 ①소장은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를 신입할 때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리가 서명날인한 인수서를 그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11條 【刑의 執行節次】 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로서 형의 집행을 게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내에 판결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관계교도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12條 【乳兒帶同】 ①소장은 신입의 여자에게 자녀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당해 교도소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동을 허가한 자녀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대동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9. 8. 29>

第13條 【新入者의 診斷】 교도소도

에 소속된 의무관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第14條 【傳染病의 定義】 법 제9조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말한다.

第15條 【傳染病患者의 收容】 소장은 교도소 등에 전염병 이병자를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병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에 격리하여야 한다.

第16條 【傳染病患者의 收容】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이 병자의 입소를 거절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입소를 거절한 기관과 당해교도소의 소제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 29>

第17條 【刑의 執行停止의 節次】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입소시킨 후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第18條 【沐浴】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시켜야 한다.

②여자인 신입자의 목욕에 대한 참여와 그의 신체 및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리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여자인 수형자의 목욕과 신체 및 의류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第19條 【新入者의 番號】 소장은 신입자의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옷깃 또는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 【遵守事項의 告知】 ①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경찰서 기타의 공무소 또는 본인의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

第21條 【新入者의 獨居收容】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수용된 자에게 대하여는 문서 및 도서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第22條 【入所者의 身分檢査】 ①입소자의 신분장부·수형자명부·만기력부는 수용후 3일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재소자의 준수사항을 그의 거실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第23條 【獨居收容의 規律】 독거수

용자는 다른 재소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입욕·결전·교회·진찰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第24條 【獨居收容等】 수형자는 다른 법령 및 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독거수용한다. <개정 1979. 8. 29>

- 1. 형기가 3월미만 자
2. 23세미만의 자
3. 초범자
4. 입소후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第25條 【同前】 소장은 재소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독거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 【同前】 ①독거수용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이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소장은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독거수용시키지 못한다.

第27條 【同前】 소장은 교도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독거수용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第28條 【同前】 ①소장·보안과장·당직교과장 교위 및 교도소속 소속의 무관·교회관·교회사 및 여자교도관리를 제외하고 교도관리는 단독으로 독거수용한 여자를 순시하지 못한다. <개정 1979. 8. 29>

②독거수용한 재소자를 순시한 교도관리는 순시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29條 【同前】 소장은 독거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야간에 독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第30條 【夜間獨居收容等】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에 독거수용된 자가 취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독거실에 재실시켜야 한다.

第31條 【混居收容】 노력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수형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시키지 못한다.

第32條 【同前】 병자 또는 불구자인 수형자와 기타의 수형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거실에 수용하지 못한다. 다만, 간호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第33條 【同前】 혼거실에는 3인 이상의 자를 수용한다. 다만,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34條 【受刑者의 席次等】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공장기타의 장소에서 사용한 수형자의 석자를 정하여야 한다.

第35條 【混居室의 代用】 혼거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第36條 【居室의 名札】 거실의 앞에는 명찰을 게시하고 그상부에는 재소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 및 형기를 그 하부에는 수형자번호 및 입소년월일을 각각 기재하되 상부와는 난을 이를 을 폐하여 두어야 한다.

第37條 【混居室의 定員의 表示】 혼거실에는 그 면적·정원 및 현재인원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第3章 戒護

第38條 【身體檢査等】 ①소장은 교도소 등에 출입의 경계를 엄밀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리 이외의 자는 오전 9시이전 또는 오후 5시이후에는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교도소 등에 출입하지 못한다.

第39條 【在所者의 戒護等】 ①교도소 등의 의원·출입구·거실·공장기타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일시 개방하는 때에는 그 요소를 수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등의 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보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수술을 하지 못한다.

第40條 【在所者의 戒護等】 교도관리는 당해 소장의 명령이나 다른 교도관리의 참여없이 수형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재소자를 출몰시키지 못한다. 다만, 병상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第41條 【同前】 교도소 등의 구내에는 관망용 방패거너 기타 계호장상애가 되는 물건을 두지 못한다.

第42條 【居室檢査等】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거실을 검사시켜야 한다.

第43條 【在所者의 身體檢査】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공장 또는 실외에서 환시하는 재소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시켜야 한다.

第44條 【戒護上의 獨居收容】 소장은 재소자중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第45條 【器具의 使用】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第46條 【同前】 ①포습과 수갑은 소요·특별·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재소자에게, 방정구는 체제에 불응하고 대성을 발하는 재소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제1항의 방정구는 6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第47條 【武器의 使用報告】 소장은 교도관리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第48條 【天災·事變時의 措置】 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를 소방 기타의 응급응무에 사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무에 사역하기 위하여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③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역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第49條 【同前】 소장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일시 석방하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시기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第50條 【他所移送時의 健康診斷】 ①소장은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

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소속의 의무관으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이송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금지한 때에는 그사유를 관계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1條 【移送時의 男女區分】 이송중에 있는 남녀 재소자는 동행시키지 못하며 20세미만의 자는 다른 재소자와 구분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第52條 【逃走時의 措置】 소장은 재소자가 도주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도주한 자가 은피할만한 지방의 경찰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53條 【同前】 소장은 제52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한 자를 체포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章 接見과 通信

第54條 【接見時間】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第55條 【同前】 수형자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第56條 【接見의 度數】 수형자의 접견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에 한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도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접견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第57條 【接見의 例外】 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第58條 【接見時의 記錄等】 ①소장은 수형자와의 접견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의 접견을 허가한 자에 대하여는 접견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견을 신청한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②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第59條 【接見의 場所】 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게 할 수 있다.

第60條 【接見時의 用語】 수형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당해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第61條 【書信의 回數】 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회수는 구류의 수형자는 10일에 1통, 금고 및 노력장유치의 수형자는 15일에 1통, 징역의 수형자는 1월에 1통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 및 행형성적이 우량한 수형자의 서신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제1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62條 【書信의 檢閱】 ①소장은 재소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합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제출하게 하며,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에서 개피하여 검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第63條 【書信의 制限】 소장은 수형자의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第64條 【公務所로부터의 書信】 소장은 법원 기타 공무소로부터 재소자에게 송부되어 온 문서는 이를 개피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65條 【書信作成의 制限】 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지 못한다.

第66條 【書信의 代書】 재소자가 서신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이를 대서하여야 한다.

第67條 【書信用紙等】 재소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체료는 자비으로 한다. 다만, 자비할 수 없는 자는 본인의 정상에 따라 관급할 수 있다.

第68條 【書信등의 所持】 소장은 재소자에게 교부한 서신 기타의 문서로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그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第69條 【書信檢閱의 迅速】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第70條 【書信의 廢棄】 소장은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해당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71條 【不許可書信의 廢棄】 교부를 불허가한 서신은 소장이 이를 폐기한다.

第72條 【書信檢閱의 措置】 소장은 접견의 참여와 서신의 검열에 있어 행형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요지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5章 給與

第73條 【給與衣類 등의 品目】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실내의
2. 작업의
3. 내 의
4. 허리띠
5. 양말
6. 이불 또는 담요
7. 배개
8. 모기장

②제1항 각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第74條 【給與食糧 등의 品目】 ①재소자에게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 이외에 다음 각호의 식기와 장구를 사용하게 한다.

- 1. 밥상
2. 밥통
3. 밥그릇
4. 국그릇
5. 접시
6. 수저
7. 수건

8. 신  
9. 우 장  
10. 모 자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 1항의 품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종이·치솔·치약·비누 기타의 일상필수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第75條【衣類 등의 給與數量】** ① 재소자가 사용하는 의류 및 침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매로 한다. 다만, 모기장은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일기·재소자의 건강상태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류 또는 침구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③식기와 일상필수품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④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계절에 적합하고 건장의 유지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⑤의기는 특히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및 잡구는 세탁 또는 소독한 후 가지면 이를 타인에게 급여하지 못한다.

**第76條【衣類 등의 色彩】** ① 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청남색으로 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색채의 의류 및 침구를 급여할 수 있다. <개정 1979. 8.29>

- 1. 20세미만의 자
- 2. 여자수형자
- 3. 병자
- 4. 이송자 또는 출정자
- 5. 기타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第77條【常用器具의 品目】** ① 저실 또는 공작내에 비치하는 상용기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책상
- 2. 침대
- 3. 초서
- 4. 비
- 5. 총채
- 6. 쓰레받기
- 7. 걸레
- 8. 휴지통
- 9. 식수그릇
- 10. 장수수그릇
- 11. 세면기
- 12. 탁구
- 13. 신장
- 14. 부채

②책상·침대·이발용구와 부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치한다.  
③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 1항의 품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저실과 공작내에 비치된 기구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第78條【主食의 給與】** 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식료는 주식·부식·음료 및 특수자양물로 하되 필요한 영양을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第79條【主食의 混合】** ①주식은 백미·대두·조 및 맥류의 혼합으로 한다.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의 곡류를 변경하거나 대용품을 급여할 수 있다.

**第80條【給與食糧의 分量】** 재소자에게 급여하는 식량의 분량과 급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第81條【飲料水】** 음료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第82條【特食의 給與】** 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식료를 급여할 수 있다.  
**第83條【飲酒 등의 禁止】** 재소자에게는 음주 또는 흡연을 허가하지 못한다.  
**第84條【病者의 食糧】** 병자의 식량 및 특수자양물은 소장이 정한다.  
**第85條【衣類 등의 自辨】** 소장은 제 75조 제 1항의 의류와 침구에 한하여 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第86條【自辨衣類 등의 種類 및 數量】** ①자변의 의류는 계절에 적합하고 교도소등의 기구와 위생에 무해한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자변의 의류 및 침구의 수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第87條【自辨衣類 등의 洗濯等】** ①자변의 의류와 침구는 적당한 때에 교환·보결 또는 세탁을 하여야 한다.  
②교도소등에서 자변의 의류 및 침구의 보결 또는 세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비용은 당해 재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第88條【自辨食糧의 種類 등】** 자변 식량의 종류 및 분량은 당해 소장이 정한다.  
**第89條【自辨食糧의 檢查】** 자변의 식량은 교도관리의 참여 아래 의무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第90條【自辨食糧의 食事】** 소장은 혼자수용자의 자변식량은 다른 재소자와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第91條【自辨食糧의 供給】** 소장은 식량의 자변을 원하는 자에게는 당해 교도소 또는 직권회에서 경영하는 판매소에서 이를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第6章 衛生과 醫務**

**第92條【居室의 清潔等】** 재소자는 그가 수용된 저실의 청소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第93條【受刑者의 理髮等】** 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형은 10일에 1회이상 짧게 깎아야 한다. 그러나 소장이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두발은 거르게 할 수 있다.  
②여자수형자의 머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짧게 깎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9. 8.29>

**第94條【女子受刑者의 化粧】** 소장은 여자수형자에게는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第95條【沐浴의 回数】** 수형자의 목욕회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소장이 정한다. 다만, 6월부터 9월까지의 5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5월까지의 7월에 1회이상의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第96條【在所者의 運動等】** ①소장은 재소자에게 매일 1시간이내의 구내 운동을 시행한다. 다만, 작업의 종류에 의하여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 1항의 운동시간은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운동시간을 2시간까지

신장할 수 있다.  
**第97條【受刑者의 健康診斷等】** ①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형자에게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 1항의 진단 기간을 반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第98條【傳染病의 豫防措置】**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며 전염병의 유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입소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주이상 격리시키고 그의 휴대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第99條【同前】** 소장은 재소자에게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를 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주사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第100條【同前】** 소장은 전염병의 유행이 있는 때에는 음식물의 자변을 금지할 수 있다.  
**第101條【傳染病罹病者의 措置】** ①소장은 재소자가 전염병에 이병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 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9. 8.29>  
**第102條【同前】** 소장은 전염병에 이병하여 격리수용한 자의 간병을 위하여 다른 수형자를 사용할 수 있다.  
**第103條【治療上の 措置】** 소장은 재소자의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 이외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여자수형자가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부를 둘 수 있다.  
**第104條【危篤의 通知】** 소장은 재소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사유를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5條【一般病院移送의 措置】** ①소장은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교도소외의 일반병원에 이송하였을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병원에 이송된 자가 재원의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06條【姪婦 등의 定義】** 법 제 30조의 임부라 함은 수태후 6월이상의 부녀자, 산부라 함은 분만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 노쇠자라 함은 연령 70세이상의 자를 말한다.

**第107條【總集教誨의 日時】** 총집교회는 휴업일에 행한다. 다만,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08條【特別教誨】** 교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교회는 그의 저실에서 행한다.  
**第109條【親族申告의 免業者】** 소장은 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第7章 教育과 教誨**

**第110條【赦免 등의 儀式】** 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한 때에는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第111條【指前敎誨】** 소장은 수형자가 사면할 때에는 그와 연고 있는 수형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관전에서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第112條【被教育者의 文房具貸與】** 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저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第113條【情緒教育】**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동회·연극 또는 연사회 기타 위안회를 개최할 수 있다.

**第8章 作業**  
**第114條【少年受刑者의 作業等】**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第115條【作業의 種類와 職業訓練】** ①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79. 8.29>  
**第116條【作業의 告知】** 소장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과정을 정하여 해당수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第117條【作業科程의 標準】** 수형자의 작업과정은 당해 수형자의 작업성과 작업성여금의 계산비율 및 작업시간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작업과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작업은 당일의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개정 1979. 8.29>  
**第118條【少年受刑者 등의 作業科程】** 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노쇠자·병약자 및 불구자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119條【申請에 의한 作業】**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第120條【都給作業의 認可】**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第121條【作業成績의 檢查】** 소장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매일 1회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第122條【산 費】** <1979. 8.29>  
**第123條【作業의 休業】** 법 제 36조 제 1항의 규정에서 "기타 공휴일" 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날과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1979. 8.29>  
**第124條【慰勞金 등의 支給節次】** 소장은 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第125條【慰勞金 등의 額數】** ①위로금 또는 조위금의 액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소장은 조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第9章 價値**  
**第126條【價値物品의 措置】** 소장은 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의 휴대금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영치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第127條【價値物品의 保管】** 소장은 영치물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의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장치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第128條【價値物品의 賣却】** ①소장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영치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②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第129條【價値金使用의 許可】** 소장은 수형자가 그 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 또는 자매의 부조기타 정당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第130條【同前】** 소장은 행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문방구·인지·우표·우편서·금전 또는 물건이 외에는 수형자에 대한 금품의 교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변을 허가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第131條【價値金使用許可의 制限】** 법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교부의 허가는 수형자로서 재소중 또는 석방시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하지 못한다.  
**第132條【金品交付의 節次】** 소장은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직업·주소·경력 기타 수형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第133條【混入物品 등의 檢查】** ①소장은 재소자에게 송부하여야 할 물품과 교부를 허가한 물건은 교도관리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음식물 및 약품의 검사에 있어서는 의무관을 관여시켜야 한다.  
**第134條【給食物의 取扱】** 음식물에 관하여는 영치에 관한 정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35條【秘密所持物品의 處理】** ①소장은 재소자가 비밀히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몰취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몰취 또는 폐기에는 법 제 56조에 정한 용도에 충용할 수 있다.  
**第136條【價値物品 廢棄處分の 措置】** 소장은 금치에 처한 자가 범인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두하는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 또는 감식에 처한 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의 전일 및 이송에 요하는 기간은 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1981. 5.20>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벌의 정지일수는 이를 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148條【懲罰執行終了와 診斷】** 소장은 운동의 정지, 금치 또는 감식에 처하였던 자가 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20>  
**第149條【懲罰期間의 計算】** 정벌에

**第10章 歸休와 懲罰**  
**第139條【歸休者에 대한 措置】** ①소장은 법 제 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일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귀휴자는 귀휴중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인근 교도소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귀휴자가 소속하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第141條【懲罰委員長의 召集】** 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第141條【懲罰委員長の 代理】** 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第142條【懲罰委員會의 議決方法】** 정벌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第143條【懲罰事犯의 收容】** 소장은 정벌사범으로 조사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第144條【懲罰의 宣告者】** 정벌은 당해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第145條【懲罰의 執行】** ①정벌은 정벌의 선고가 받은 후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20>  
②금치 또는 감식의 처분을 받은 자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정전·서신·작업·운동 및 도서열독을 금지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혼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신설 1981. 5.20>  
③감식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주·부식급여량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감량하여 급여하며, 감식기간중에는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식량의 자변을 허가하지 못한다. <신설 1981. 5.20>  
④운동의 정지, 금치 또는 감식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1. 5.20>  
**第146條【懲罰執行中の 診斷】** 금치 또는 감식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 건강상태를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20>  
**第147條【懲罰執行의 停止等】** ①소장은 금치에 처한 자가 범인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두하는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금치 또는 감식에 처한 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의 전일 및 이송에 요하는 기간은 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1981. 5.20>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정벌의 정지일수는 이를 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148條【懲罰執行終了와 診斷】** 소장은 운동의 정지, 금치 또는 감식에 처하였던 자가 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20>  
**第149條【懲罰期間의 計算】** 정벌에

처한 수형자를 이송으로 인하여 인수한 소장은 인수 후 3일 내에 정벌의 집행 여부를 개시하여야 한다. 인수전에 집행개시까지의 일수는 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150條 【護送者の懲罰執行】 수형자가 이송도중에 기율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정벌한다.

第151條 【懲罰의 記錄】 소장은 재소자의 정벌에 관한 사항을 신분장부 및 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5. 20>

第11條 假釋放

第152條 【假釋放審査委員會의 報告】 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53條 【假釋放審査對象者의 基準等】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 구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형기 3분의 1을 경과한 자로서 행장심사의 결과 최상급에 속하는 자
- 2. 제1호 이외의 수형자로서 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第154條 【假釋放具申의 節次】 위원장은 법 제 51조 제1항의 규정의 한 가석방구신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그 결정서에 판결서·형의 집행지시서의 등본·가석방심사조서 및 신원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第155條 【假釋放의 節次等】 소장은 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허가에 의하여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때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후 본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第156條 【假釋放審査等】 가석방의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 5. 20>

第157條 【假釋放者의 遵守事項】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것
- 2. 관할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 3.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허가를 받을 것. 다만, 외국에 여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158條 【假釋放者의 再犯報告】 소장은 가석방된 자가 형법 제 74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지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12章 釋放

第159條 【釋放節次等】 소장은 형기 종료·사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는 석방전 3일간은 독거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논고하여야 한다.

第160條 【滿期釋放者의 事前調査事項等】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61條 【釋放者의 行狀等通報】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방

할 자의 성격 및 행장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62條 【釋放者의 保護措置】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의 보호를 정성보호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9. 8. 29>

第163條 【滿期釋放의 日時】 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한 수형자의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第13章 死亡 및 死刑의 執行

第164條 【死刑執行後의 檢視】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상을 검사한 후 5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수를 돌지 못한다.

第165條 【在所死亡時의 措置】 ① 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시하여야 한다.

② 재소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연월일시를 사망장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재소자가 자살 기타 병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 검시를 받은 후 검시자 및 참여자의 관직과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66條 【同 前】 소장은 재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병명·병력 및 사망연월일시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67條 【同 前】 소장은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 또는 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기타의 공무소에 시체를 송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168條 【同 前】 ① 소장은 제 1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시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교도소의 묘지에 가장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 소장은 시체를 가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第169條 【同 前】 ① 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하였을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연월일시를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표표를 세워야 한다.

② 제 1항의 표표는 석물로 하여야 한다.

第14章 未決收容

第170條 【死刑受刑者의 收容】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71條 【未決收容者中共犯者의 隔離收容】 ①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②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72條 【未決收容者의 作業等】 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작업에 취업시키지 못한다.

第173條 【未決收容者의 死亡等의 通報】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74條 【未決收容者의 作業等】 소장은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작업에 취업시키지 못한다.

第175條 【警察署留置場】 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第176條 【外部醫師의 診察等】 형사소송법 제 34조·제 89조·제 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전달을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附 則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79. 8.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1981.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알기 쉬운 인권 지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편

임종인 김기진 박수근 박승욱 박찬운  
백승현 안상운 유선호 윤기원 이기욱  
이덕우 이오영 이종걸 장주영 천정배

독두